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 현황 및 개선 방안 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기록관리학전공

전슬비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강순애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 현황 및 개선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in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2015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기록관리학전공

전슬비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강순애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 현황 및 개선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in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위 논문을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기록관리학 전공

전 슬 비

전슬비의 기록관리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5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국 문 초 록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 현황 및 개선 방안 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기록관리학전공

전 슬 비

우리나라 정보공개제도는 정부운영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발전해왔다. 중앙행정기관은 정보공개청구제도와 사전정보공개제도, 원문정보공개제도를 통해 적극적이고 사전적인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정보공개청구제도와 사전정보공개제도, 원문정보공개제도를 종합하여 다루고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업무담당자 설문조사를 통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수행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이 정보공개제도 운영을 위한 내부 운영 지침 및 규정을 갖추고 있었으나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있지 않은 기관도 있었으며 재검토 기한이 지났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기관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 청구건수는 연간 평균 16%의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처리율에 있어서는 감소 추세를 보였다. 정보공개율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매년 85% 이상이었으나 공개율 비중에 있어서 전부공개 비중은 줄고 부분공개 비중이 늘어났다.

셋째, 44개 중앙행정기관의 평균 사전정보공개 건수는 544건으로 나타났으며

대다수의 기관이 평균 이하의 사전정보공개 건수를 제공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업무담당자는 『정보공개운영매뉴얼』과 『사전정보공표 운영가이드』를 참고하고 있었으나 기관마다 사전정보공개를 지칭하는 용어가 다르고 발굴과정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기관들도 있었다.

넷째, 45개 중앙행정기관의 평균 원문공개율은 36%로 나타났으며 기관 간 원문공개율의 격차가 컸다. 업무담당자들은 대부분 원문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 민감 정보, 개인 정보 필터링 기능의 한계와 기록생산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횟수 부족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다섯째, 업무담당자들의 인식 조사 결과 이해도와 책임감은 평균 4점 이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만족감과 보람, 자부심은 평균 3점 이하로 나타나 전반적인 업무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각 기관들은 지침과 규정을 신속하게 업데이트하여 홈페이지에 제공해야 한다.

둘째, 각 기관마다 정보공개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업무량에 따른 탄력적인 인원을 배치하여 업무 증가에 따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통일성 있고 표준화된 사전정보공개제도 운영 지침을 만들어 용어의 통일과 업무 절차, 사전정보 발굴과정 절차를 명확히 하여 규제하여야 한다.

넷째, 민감 정보와 개인 정보 필터링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상의 미비점들을 정기적으로 보완하고, 처리과 내 기록생산자와 정보공개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원문정보공개제도 교육 횟수를 확대해야 한다.

다섯째,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규정을 강화하여 서면심의 비중을 줄이고 대면심의 비중을 확대하고, 전문성을 갖춘 외부 위원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

여섯째, 무분별한 정보공개청구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고 업무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만족도를 높이고 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주요어】 : 정보공개제도, 중앙행정기관, 정보공개청구제도, 사전정보공개제도, 원문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 업무담당자

목 차

I. 서론	1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1.3 선행연구	3
II. 이론적 배경	9
2.1 정보공개법의 의의 및 변천	9
2.2 정보공개제도 운영 지침 및 절차	15
2.3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사례	19
2.3.1 국내	20
2.3.2 국외	25
III.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 현황	31
3.1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 청구 현황	31
3.2 중앙행정기관의 사전정보공개 현황	37
3.3 중앙행정기관의 원문정보공개 현황	41
IV.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제도 분석	46
4.1 조사 방법 및 내용	46
4.2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제도 담당자 설문지 분석	49

4.2.1 업무담당자의 일반적인 사항	49
4.2.2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정책에 관한 사항	51
4.2.3 정보 비공개 최소화 관련 사항	58
4.2.4 정보공개제도의 사전적·적극적 공개에 관한 사항	65
4.2.5 정보공개제도의 체계적인 기반마련에 관한 사항	71
4.2.6 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인식에 관한 사항	74

V.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84

5.1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제도 현황 및 설문 분석 결과	84
5.2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제도 문제점 및 개선 방안	88

VI. 결 론 90

참고문헌	93
부 록	99

ABSTRACT	130
----------------	-----

표 목 차

<표 1> 정보공개법의 제정 및 주요 개정 사항	11
<표 2> 정보공개법 제7조 행정정보 공표 등	13
<표 3> 정보공개법 제8조의 2 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14
<표 4> 45개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제도 내부 지침 및 규정 명칭 ...	16
<표 5> 43개 중앙행정기관의 운영 지침 내 교육 횟수 지정 현황	16
<표 6> 처리율 현황 조사 대상 기관	32
<표 7> 중앙행정기관의 4년 간 청구건수 대비 처리건수 현황	33
<표 8> 중앙행정기관의 3년 간 처리건수 대비 공개건수 현황	35
<표 9> 전부공개와 부분공개의 비율 비교	36
<표 10> 사전정보공개 건수 조사 대상 기관	38
<표 11> 홈페이지 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전정보공개제도 명칭	39
<표 12> 공공기관 사전정보공개 순위 비교	39
<표 13> 중앙행정기관의 사전정보공개제도 운영 현황(2015. 8. 31 기준)	40
<표 14> 공공기관 원문공개율 현황 비교표(2015.8.31. 기준)	42
<표 15> 중앙행정기관의 기능과 성격 별 기관 수	42
<표 16> 중앙행정기관의 원문정보공개제도 운영 현황(2015. 8. 31 기준)	43
<표 17> 설문조사 대상 기관	46
<표 18> 45개 중앙행정기관 정보공개 업무담당자 설문조사 항목	48
<표 19> 정보공개 업무담당자의 일반적 특성	50
<표 20> 기관 별 내부 지침 및 규정 유·무	51
<표 21> 전체 업무 중 정보공개 업무량 비중	52
<표 22> 정보공개 업무 담당 주체에 대한 인식	53
<표 23> 기관 별 홈페이지 상 정보목록 제공 여부	53
<표 24> 정보목록 제공이 정보공개업무량 축소에 미치는 영향	54
<표 25> 기관 별 연간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횟수	55
<표 26>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사유	55
<표 27>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구성 비율	56

<표 28>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유형 비율	58
<표 29> 정보공개 여부 및 범위 결정 담당	59
<표 30> 정보공개 여부 및 범위 결정 담당에 대한 인식	59
<표 31> 정보공개 범위 결정 시 기준 우선순위(1순위)	60
<표 32> 비(부분)공개 결정처리 기한 미 준수 비율	61
<표 33> 비공개 결정 시 사유 제공 여부	62
<표 34> 기관 별 부적정한 비공개 최소화 제도 운영 여부	62
<표 35> 비공개 최소화를 위해 운영 중인 제도	63
<표 36> 정보공개 모니터단 실시 여부	63
<표 37> 정보공개 모니터단의 운영 효과	64
<표 38> 기관 내 의견 파악 제도 유·무	65
<표 39> 기관 별 홈페이지 사전정보공개 목록 게재 여부	65
<표 40> 사전정보공표 운영가이드 참고 여부	66
<표 41> 사전정보공표 운영가이드 준수 여부	66
<표 42> 내부 운영 규정 및 지침의 범위	67
<표 43> 각종 위원회 등의 회의록 공개 여부	68
<표 44> 사전정보공개제도가 정보공개제도에 미치는 영향	68
<표 45> 원문정보공개제도 운영의 문제점 우선순위	69
<표 46> 원문정보공개시스템의 기능개선의 필요성	70
<표 47> 원문정보공개제도의 법률적 제도개선의 필요성	70
<표 48> 원문공개제도가 정보공개제도에 미치는 영향	71
<표 49> 정보공개업무 전담 부서 및 담당 인력	72
<표 50> 소속 기관 내 정보공개 업무 장소 확보	73
<표 51> 소속 기관의 연간 지도점검 횟수와 연간 교육 횟수	73
<표 52>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대한 업무담당자의 인식	76
<표 53> 정보공개 업무 수행 시 불만족 사항	77
<표 54> 정보공개제도 개선되어야 할 사항	78
<표 55> 카이제곱 검증 결과	79
<표 56> 직렬에 따른 인식 비교	81

<표 57> 근무경력에 따른 인식 비교	82
-----------------------------	----



그 립 목 차

<그림 1> 정보공개업무 처리 흐름도	18
<그림 2> 산림청 홈페이지 - 사전정보공개(즐거찾기 정보)	22
<그림 3> 미국 재무부 정보공개 페이지	26
<그림 4> 미국 국방부 정보공개 홈페이지	28
<그림 5> 미국 법무부 정보공개 홈페이지	29
<그림 6> 미국 국토안보부 정보공개 홈페이지	30
<그림 7> 중앙행정기관의 4년 간 정보공개 처리율 추이	32
<그림 8> 중앙행정기관의 3년 간 정보공개 공개율 추이	34



부 록 목 차

<부록 1> 설문지	99
<부록 2>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제도 내부 지침 및 규정 명칭 ...	112
<부록 3> 43개 중앙행정기관의 운영 지침 내 교육 횟수 지정 현황 ...	114
<부록 4> 중앙행정기관의 최근 변동년도	115
<부록 5>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 처리율 현황(2011~2014)	117
<부록 6>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율 현황(2012~2014)	121
<부록 7> 전부공개와 부분공개 비율 비교(2012~2014)	124
<부록 8> 중앙행정기관의 사전정보공개제도 운영 현황	127
<부록 9> 중앙행정기관의 결정처리 기한 미 준수 비율 현황(2014년)	128

I.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정보공개제도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 외의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관리하는 문서 및 기타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한 제도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참여 민주주의의 핵심 장치이다. 국민은 정보공개제도를 통해 국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고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의 신뢰감을 얻게 된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3번째,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하였으며, 1992년 청주시의 정보공개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19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을 제정하고 1998년부터 시행하였다.

정보공개제도는 정부운영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해 함께 진화해왔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국민들의 정보공개에 대한 요구도 나날이 증가하여 정보공개법이 처음 제정된 1998년 26,338건에 불과하던 정보공개제도의 청구건수가 2014년에는 612,856건으로 약 23배 증가하였다. 또한 정부는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사전에 정보를 공개하는 사전정보공개제도와 원문정보공개제도를 통해 적극적이고 사전적인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고자 하였다.

정부 3.0이 도입된 2013년 정보공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한 해 접수된 정보공개 청구건수는 총 552,066건이었으며, 기관별로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가 327,199건(59%), 중앙행정기관 131,862건(24%), 공공기관 67,161건(12%), 교육청 25,844건(5%) 순으로 나타났다. 기관별 처리율은 공공기관이 81%, 지방자치단체가 68%, 교육청과 중앙행정기관은 56%로 나타났으며, 공개율은 지방자치단체가 98%, 공공기관이 97%, 교육청이 97%, 중앙행정기관이 89%로 나타났다.

또한 2015년 8월 31일까지의 사전정보공개 건수는 지방자치단체가 71,317건, 공공기관 25,598건, 교육청 19,179건, 중앙행정기관이 23,970건으로 나타

났으며, 원문공개율은 지방자치단체가 67.3%, 교육청 42.4%, 중앙행정기관이 36%로 나타났다. 사전정보공개제도와 원문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 사전정보공개 범위 선정 방법, 방대한 서비스 대상 정보의 사전 검토, 공개되고 있는 정보의 양과 질, 모니터링 제도의 한계 등이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김혜원, 2014; 정민영, 2015).

이를 통해 중앙행정기관이 지니는 위상이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에 비해 큼에도 불구하고 처리율과 공개율, 사전정보공개 건수, 원문공개율 모두 낮아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앙행정기관은 정보공개제도의 처리율과 공개율의 증가 뿐 아니라 정보공개청구제도와 사전정보공개제도, 원문정보공개제도를 포함한 전체적인 정보공개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동안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연구는 주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과 관련된 연구이거나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법·제도, 공개행태 등을 주로 다루어 왔다. 또한 정보공개청구 현황만을 다루고 있으며 정보공개청구제도와 사전정보공개제도, 원문정보공개제도를 모두 종합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종합적 고찰을 위해 정보공개연차보고서 및 기관별 홈페이지 조사를 통해 정보공개 운영 현황 데이터를 수집하여 운영 추이를 파악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 업무 담당자들을 통해 정보공개제도의 실제 운영 현황을 설문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보다 효과적인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 현황 및 개선 방안 연구를 위해 문헌조사에 의한 이론적 연구와 기관별 정보공개제도 운영 현황, 설문조사에 의한 실증적 연구를 병행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문헌 조사를 통해 정보공개제도의 의의 및 정보공개법의 변천 과정을 조사하고 45개 중앙행정기관의 홈페이지 조사를 통해 각 기관의 운영 지침

및 규정을 분석하였다.

둘째, 정보공개청구제도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기관의 변동이 없는 33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연차보고서의 데이터를 중심으로 정보공개 청구 현황을 조사하여 4년 간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처리율, 공개율의 운영 추이를 분석하였다.

셋째, 각 기관 홈페이지와 ‘대한민국정보공개’(www.open.go.kr)를 통해 45개 중앙행정기관의 사전정보공개제도와 원문공개제도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였다.

넷째, 45개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업무 현황을 조사하였다. 설문조사의 설문기간은 2015년 9월 10일부터 2015년 10월 14일까지 진행하였으며 전화, 우편, 전자우편을 통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문헌조사와 현황조사, 설문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동일한 기준의 중앙행정기관 정보공개제도 데이터 수집을 위해 정보공개연차보고서를 중심으로 현황을 파악하였기 때문에 각 기관의 성격과 특성을 반영한 다각적인 데이터 분석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1.3 선행연구

정보공개제도와 관련된 연구는 정보공개제도의 법·제도, 공개행태, 운영 실태, 활성화 방안 모색 등을 다루는 것이 대부분이며, 정보공개제도를 연구 주제로 다루고 있는 학문 분야는 기록 관리학 보다 행정학과 법학 쪽이 더욱 많다. 연구의 대상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주로 다루고 있으며 사전정보공개제도와 원문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청구를 모두 다루는 연구는 거의 없다. 정보공개제도와 관련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보공개제도의 법, 제도에 관한 연구로 박선희(2010)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가 헌법상 합치하는 제도인지 고찰하고 외국의 정보공개제도 관련 입법례를 통해 우리의 정보공개제도와 비교해보고 정보공개제도 절차, 결정 및 불복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정보공개제도의 한계를 헌법적인 부분과 정보공개법적인 부분으로 나누어 알아보고 기관 간 편차를 해소하여 내실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한 일선기관의 역량을 더욱 강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장애인 이용 환경 개선, 다양한 OS 지원 등 보편적 웹 서비스 제공 등으로 온라인 공개를 활성화 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김이숙(2008)은 우리나라와 주요국가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공공기록물공개 제도가 그 기능 발휘에 적합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절차에 따라 운용되고 있는지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 방안으로 기록물관리법과 정보공개법의 체계화와 공개여부 절차의 간소화 등을 제시하였다.

둘째, 정보공개제도의 공개행태에 관한 연구로 안병철(2009)은 정보공개제도 도입 이후 정보공개 행태에 관련한 연구가 미미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정부관료제의 정보공개행태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통해 행정부처의 기능성격과 정보공개율이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기관의 권력 정도가 정보공개율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것 등의 행정부처별 행태적 특성을 밝혀냈다.

이명진, 문명재(2009)는 기관의 정보공개행태를 정의하고 기관의 정보공개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 수준의 요인을 살펴보고 정보공개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기관의 소극적 공개 행태에 초점을 맞추어 어떤 요인이 이러한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지 분석하였다. 개선 방안으로는 법제도의 보완이나 공무원의 교육, 부패방지과 더불어 기관단위의 유인 구조를 설정해주는 것 등을 제시하였다.

셋째,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실태에 관한 연구로 서향희(2014)는 지방자치제도를 국민 고충과 민원 처리 등 대국민서비스 기관으로써 인지하고 정보공개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정보공개 성과의 한계점을 기록 관리적인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음이라고 지적하면서 정보공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통 업무에 대한 비공개세부기준을 정립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으나 정보공개의 뚜렷한 기준을 제시하지는 못하였다는 한계점이 있다.

김은정(2008)은 정부의 불명확한 비공개 기준으로 인한 국민의 불복신청 증가, 행정 관료의 인식 미흡으로 인한 정보목록의 시의성 부족 등이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문제점들로 지적되고 있음에 주목하여 1998년 이후 우리나라의 행정정보공

개제도에 대한 운영 실태를 세부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행정정보공개 확대, 비공개 대상정보 기준의 구체화, 공무원 대상 교육 등을 통한 인식전환과 국민의 인식제고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넷째, 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로 유원종(2013)은 울산광역시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울산시 공무원과 울산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정보공개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정보공개제도의 홍보강화, 공무원 교육 강화 및 인식 변화, 사전정보 공개제도의 활성화, 정보공개 법률 정비, 정보공개 이용자 편의제공 강화, 정보공개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 기회 확대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이춘형(2010)은 기록물관리 인프라의 부족, 시설 및 장비의 미흡, 전문 인력의 부재, 홈페이지의 활용성 부족으로 서울특별시 및 산하 자치구의 정보공개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전문 인력의 확보, 기록관의 공간 확보, 인프라의 확충, 법제도적 정비, 홈페이지 및 온라인 서비스 개발을 통한 접근의 용이성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다섯째, 사전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연구로 김혜원(2013)은 중앙행정기관의 사전정보공개제도 운영 및 서비스를 조사·분석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정보공개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이에 정보공개 업무 전담 부서의 신설, 사전정보공개 운영 절차를 각 기관 정보공개 관련 규정에 명시하여 일관성 있는 업무 진행, 홈페이지 접근성의 확대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김유승(2010)은 공공기관의 사전정보를 공개하는 사이트를 중심으로 해외의 공공정보를 사전에 공개하는 사이트 사례를 기반으로 사전 공개 서비스를 조사·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쌍방향적 소통과 적극적인 이용자 참여를 위한 정보공개를 위해 정보의 온라인 공개, 정보의 품질 향상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여섯째, 원문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연구로 정민영(2015)은 운영사례분석과 원문 공개율 등의 정보공개서비스 경과를 통해 원문정보공개 서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조사 결과 방대한 서비스 대상 기록물의 사전검토문제, 원문정보공개 되고 있는 기록물의 양과 질 평가문제, 원문정보공개 서비스에 대한 기관 내 부정적인 조직문화문제 등의 6가지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보공개 전담 부서의 설치, 모든 공무원

을 대상으로 하는 방법론 교육 및 비공개 세부기준의 마련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허준석(2015)은 원문정보공개 서비스과정에서 서비스 대상인 전자기록물이 쉽게 위·변조되거나 불법적인 시스템 접근이 용이하다는 문제점에 착안하여 원문정보공개서비스에서 전자기록물의 관리요건 중 이용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요인을 밝히고 효율적인 전자기록관리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특히 원문정보공개서비스의 기록물관리 기능의 보완, 협력체 구성을 통한 시스템 전반에 걸친 개선 작업과 이에 대한 평가 환류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Zappile(2014)는 1967년 시행된 미국의 정보공개법(FOIA)을 인사 관행, 외교 정책의 책임성 강화, 국내 및 해외 정보 수집 활동 등의 정부 활동에 접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규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정보공개법(FOIA)을 통해 국가 기밀이나 기타 권한 정보 등을 보호하지 못하게 되고 이를 통해 정부의 권리를 위협받을 수도 있다고 보고 정보공개법을 운영하는데 있어 법률 개정 및 연방과 관련된 판사, 대통령, 법무부 등의 기관들이 정보공개제도 집행 전반에 걸쳐 정보공개 보호와 공개의 이익 등을 견주어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정을 통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Birkinshaw(2010)는 영국의 공공기관 뿐 아니라 민간 기관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정보공개법(FOIA)의 성격과 법규에 제시된 내용, 운영 현황 등을 조사·분석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정부 행정 운영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위해서는 정보공개법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하지만 국가 안보나 개인 정보 보호 정책 측면에서는 정보공개법이 부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통해 개인의 알 권리 충족과 정부의 정보 보호 측면을 절충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Worthy, Hazell(2010)은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아일랜드의 정보공개 비교 데이터를 측정하여 정보 공개의 실태 평가, 기술 관료 평가 등을 평가하여 영국의 정보공개제도 4년간 운영 현황을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다른 국가들에 비해 중앙정부의 지원과 교육, 강력한 권한을 가진 리드 부서, 명확한 관련 관례 등을 통해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정보공개 거부권 사용을 가장 억제하고 있는 나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정보공개제도를 정치적 환경에 의해 형성되는 제

도라고 규정하고 대중의 신뢰와 정치적지지 등을 얻어야 효과적인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Shepherd, Ennion(2007)은 영국의 정보공개법(FOIA)이 영국 공공 정보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비슷한 법안을 가진 미국, 캐나다, 호주, 아일랜드 등의 50개국을 현황을 조사하고 그 중 런던 대학, 수도권 경찰, 마을 대학 등의 기관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통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정보공개 시스템의 기반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인 정보공개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체계적인 제도의 구축을 통해 모범적인 관행을 확립하여 적극적인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을 강조하고 있다.

Halstuk, Chamberlin(2006)은 미국의 정보공개법(FOIA) 조항 중 정보공개 거부권에 주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정보공개 거부권을 공공의 권리로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운영되는 장치로 보고 정부가 개인 정보 보호를 근거로 정보 공개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정보공개제도를 개인의 알 권리 충족과 개인 정보 보호 사이에서 끊임없는 일어나는 갈등의 산물이라고 보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균형을 지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정보공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공 차원에서 개인의 두 가지 욕구 충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지금까지 수행된 국내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의 법·제도, 공개행태, 운영 실태를 주로 다루고 있으며 그에 따른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사전정보공개제도와 원문공개제도를 포함한 종합적인 정보공개제도를 다루는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국외 선행연구는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 개인 정보 보호와 개인의 알 권리 충족 간의 갈등을 주로 다루고 있으며 공공 부문에서의 행정적 지원과 국민의 참여 증대, 정부와 국민 간의 협력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안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다루고 있지 않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제도, 사전정보공개제도, 원문정보공개제도를 모두 다루고자 한다.

따라서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제도 현황을 비교·분석하고 정보공개 업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정보공개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II. 이론적 배경

이 장에서는 정보공개제도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 정보공개제도의 의의 및 변천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지침 및 절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정보공개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내 5개의 중앙행정기관과 미국의 5개 중앙행정기관 기관을 선정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2.1 정보공개제도의 의의 및 변천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자신들이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등을 공유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신뢰감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과정을 통해 정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국민은 국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되므로 정부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정보공개제도는 크게 2가지로 나누어 국민들이 정보를 청구하여 공개하는 것과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구분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공개제도를 정부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통해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라고 정의하고, 기존의 좁은 의미에서 정보공개청구를 의미하던 정보공개제도의 범위를 확대하여 국민들의 정보공개청구, 사전정보공개, 원문공개를 포함하여 정보공개제도라고 지칭하고자 한다.

참여민주주의의 핵심 장치인 정보공개제도는 정부의 정보 독점을 방지하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정부는 가장 많은 정보를 소유하고 관리하는 기관으로 국민이 이러한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신뢰감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정보공개제도의 목적이다. 즉 정보공개제도는 행정 과정에 국민 참여의 확대, 국민에 의한 행정 감시를 통해 정부와 국민 사이의 신뢰감을 형성하도록 하는 장치로 기능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정보공개제도를 실시한 것이 특징이다. 1992년 청주시의 정보공개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19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고 1998년부터 정보공개법을 시행하여 아시아에서 최초로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게 되었다. 정보공개제도는 정보공개법 제 1조를 통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정보공개법 제1조).

정보공개제도는 시대의 흐름에 따른 정부운영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추어 함께 진화해왔다. 정부는 인터넷 패러다임이 진화해나가는 과정에서 이를 사회 각 분야에 적용하여 정부와 공공부문에서 이를 활용한 정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다(나종희 외, 2007). 이러한 진화 과정 속에서 국민의 지위와 정부의 가치 성향도 변화하여 정부운영 패러다임은 정부 1.0에서 정부 2.0, 정부 3.0으로 진화하였다(이혜정, 2007). 정부운영 패러다임이 진화함에 따라 이에 기초하여 운영되는 정보공개제도 역시 변화를 겪게 된다. 정부 1.0에서는 정보공개 '결정'패러다임, 정부 2.0에서는 정보공개 '청구'패러다임, 정부 3.0에서는 정보공개 '상호작용'패러다임으로 진화하였다.

정보공개법은 정부운영 패러다임과 정보공개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추어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정보공개법의 제정과 주요 개정사항을 정리하여 <표 1>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정보공개법의 제정 및 주요 개정 사항

구분	연도	제정 및 주요 개정 사항
정부 1.0	19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
정부 2.0	2004년	●정보공개 대상기관의 확대, ‘행정정보 공표제도’ 도입 ●‘정보공개위원회’의 설치 ●‘정보공개심의회’를 통한 정보공개 심의절차의 강화 ●정보공개 결정기간의 단축 ●정보목록의 작성 및 비치 명시
	2006년	●비공개 대상정보 범위 세부기준 수립
	2011년	●사전 공개대상정보의 구체화 ●정보공개심의회 미 개최 요건 명시 ●‘정보 부존재’, ‘진정 및 질의’ 등을 ‘민원’처리로 명시 ●중앙행정기관, 시·도, 시·군·구, 교육청에 ‘정보공개책임관’을 지정
정부 3.0	2013년	●‘원문정보 공개제도’ 도입 ●이의신청 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의무화 ●청구일로부터 20일 경과 미결정시 불복신청 가능성 명시
	2014년	●정보공개 수수료 기준 개선

우리나라 초기의 정보공개제도는 국민들의 알 권리 신장과 정부 운영의 투명성 제고가 사회적으로 대두되면서 학계와 시민사회의 꾸준한 노력으로 1991년 청주시의 정보공개조례 제정과 1992년 대통령 선거 공약을 필두로 시작되었다. 이 후 1996년 정보공개법을 공포하고 1998년부터 시행하였다. 당시의 정보공개제도는 ‘결정’패러다임의 형태로 국민의 정보공개 요구가 발생하면 정부가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정부는 정보를 관리하는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정보의 공개를 최소화하려는 비밀주의를 핵심가치로 삼고 국민은 수동적인 정보의 수신자로서 일원적인 창구를 통해 정부가 결정하는 결과에 따라 정보 공개를 제공 받을 수 있었다(이재완, 2014). 이를 통해 정부 1.0패러다임의 정보공개제도는 전통적인 정부 중심으로 정부가 결정하면 국민은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정보공개법은 국민들의 청구와 관련된 조항들이 대부분이었으며 비공개 정보 대상을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어 정보공개 과정에서 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이나 공무원이 공개여부 결정에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의 정보공개제도는 ‘청구’패러다임으로 참여와 공유, 개방을 핵심가치로 삼아 정보공개와 국민 참여를 통한 정부와 국민간의 협업을 추구한 정부 2.0 패러다임 하에서 발달하였다(나종희 외, 2007). 이 시기의 정보공개제도에서 정부는 기존의 정보를 관리하는 관리자 역할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제공자로, 국민은 기존의 수동적인 수신자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정보 욕구를 발현하는 청구자의 역할로 진화하였다(이재완, 2014). 정보를 더 이상 기관이나 정부의 소유가 아닌 국민의 것이라는 전제하에 국민들이 자유롭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 2.0 하에서는 여러 차례의 정보공개법 개정을 통해 비공개 정보 대상을 구체적이고 한정적으로 규정하여 공개여부 판단에 기관과 공무원의 재량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2004년 개정을 통해 정보공개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정보공개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정보공개심의회’를 통한 정보공개 심의절차를 강화시켜 공정한 정보공개를 추구하고자 하였다. 또한 정보공개 결정기간을 15일에서 10일로 단축하여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빠른 시간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같은 해 개정사안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사전정보공개제도’의 도입으로 이 제도를 통해 국민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 공공기관이 국민이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미리 선정하여 제공하도록 하였다. 국민은 공공기관의 사전적 정보공개를 통해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감을 쌓을 수 있고 공공기관은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 개정을 통해 기존 정부 1.0하에서 운영되던 소극적인 정보공개제도를 넘어서 사전에 정보를 공개하는 적극적인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고자 하였다.

‘사전정보공개제도’는 현재 정보공개법 제7조에 해당하며 세부 내용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정보공개법 제7조 행정정보 공표 등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2006년에는 제9조 제3항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공공기관이 기존의 애매했던 비공개대상 정보의 범위를 세부적으로 수립하도록 개정하였다. 이후 2011 개정을 통해 ‘정보 부존재’, ‘진정 및 질의’ 등 민원성 청구를 ‘민원’처리로 명시하고 중앙행정기관, 시·도, 시·군·구, 교육청에 ‘정보공개책임관’을 지정하였다. 또한 사전 공개대상정보를 구체화하고 정보공개심의회를 열지 않을 경우 자세한 요건을 명시하도록 하는 등 사전정보공개제도를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었다(2014 정보공개연차보고서).

2013년 현 정부는 정부 3.0 패러다임을 발표하고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의 구현을 통해 기존의 정부 2.0에서 한 단계 진화한 공공정보의 적극적인 개방과 공유를 통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국정과정에 대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국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정부3.0백서, 2013). 정부 중심으로 제공되던 일방향적인 서비스의 정부 1.0을 넘어 국민 중심의 쌍방향 서비스를 지향하는 정부 2.0을 구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 개인별 맞춤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정부 3.0의 목적이다(방민석, 2013). 기존의 정부운영 패러다임에서 국민을 집합적 시민으로 인식하였다면 정부 3.0에서는 국민을 개

별적이고 차별적인 원자화된 대상으로 보고 국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그들이 원하는 방식과 형태로 지능화된 맞춤형 서비스로 개별적으로 제공하고자 하였다(최영출, 2013). 이런 과정의 정보공개를 통해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국민과 행정기관 간의 신뢰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공개 ‘상호작용’패러다임이 발전하게 되었다.

이 패러다임 하에서 공공기관은 ‘대한민국정보공개’ 홈페이지 뿐 아니라 각 기관 별 홈페이지에 정보공개를 위한 메뉴를 만들어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들의 정보공개 청구를 수용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들의 정보공개 청구에 의한 수동적 공개인 정보공개청구제도 뿐 아니라 공공기관이 능동적으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는 사전정보공개제도와 원문공개제도를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 3.0의 도입과 함께 2013년 개정에서는 사전적이고 적극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었다. 이의신청 시 정보공개심의회의 개최를 의무화하고 청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이후에도 공공기관에서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하지 못할 시에 불복신청을 제기할 수 있음을 명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세계에서 최초로 ‘원문정보 공개제도’ 도입하여 공개대상 전자결재 문서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원문정보 공개제도’는 현재 정보공개법 제 8조의2에 해당하며 세부 내용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정보공개법 제8조의 2 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제8조의2(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공공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2014년에는 정보공개 수수료 기준을 개선하여 국민들이 더욱 더 적극적이고 자유롭게 정보공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개정 과정을 통해 정보공개제도는 기존의 정부를 중심으로 정보를 보호하던 분위기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고 국민의 정보공

개 청구가 있기 전에 정부가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고 정보의 원문을 공개하는 사전적이고 적극적인 방향의 정보공개제도로 바뀌게 되었다.

2.2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지침 및 절차

1) 기관별 정보공개제도 운영 지침

정보공개법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에 따라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교육청에 비해 기관 별로 성격과 기능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정보공개법 외에 기관의 특징을 반영한 기관 별 운영 지침을 가지고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각 기관 별 성격과 기능에 맞는 정보공개제도 운영 지침을 갖추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2015년 9월~10월 사이에 중앙행정기관 45개 기관의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각 기관 별 정보공개 운영 지침 및 규정의 게재 여부를 조사하였다. 본 장에서는 조사 결과 나타난 중앙행정기관을 알파벳 약자로 사용하고자 한다.

조사 결과 홈페이지에 정보공개제도 운영 지침을 게재하고 있는 기관은 45개 기관 중 43개 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홈페이지에 게재된 43개 기관의 운영 지침을 조사한 결과 3개 기관의 운영 지침은 재검토 기한이 지난 것으로 나타났다. 홈페이지에 운영 지침을 게재하고 있지 않은 기관 2개 기관 중 설문 조사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운영 규정의 유무를 확인한 결과 1개 기관은 정보공개제도 운영지침을 소유하고 있으나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1개 기관은 기관 내 정보공개 운영 규정 대신 정보공개법을 중심으로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 지침을 분석한 결과 각 기관의 운영 지침의 명칭이 ‘정보공개운영규정’, ‘정보공개규정’, ‘행정정보공개지침’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었다. 기관 별 내부 운영 지침 및 규정의 명칭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 <표 4>와 같다(부록 2 참조).

<표 4> 45개 중앙행정기관의 내부 지침 및 규정 명칭

기관 별 내부 지침 명칭	기관 수
규정	24
지침	17
훈령	2

운영 지침의 내용은 크게 정보공개책임관 지정 및 주무부서, 정보공개제도 절차, 심의회의 운영, 사전정보공개제도 등의 내용으로 기관마다 크게 다르지 않고 대부분이 비슷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정보공개제도 운영 지침에서 연간 교육 횟수와 지도점검 횟수를 제시하고 있는 기관과 그렇지 않은 기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횟수 정도에서 차이점을 보였다. 홈페이지에 운영 지침을 게재하고 있는 43개 중앙행정기관의 운영 지침의 연간 교육 횟수를 정리한 표는 다음 <표 5>와 같다(부록 3 참조).

<표 5> 43개 중앙행정기관의 운영 지침 내 교육 횟수 지정 현황

운영 지침 내 교육 횟수	기관 수
내용 없음	9
연 1회	32
연 2회	2

기관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공개제도 교육의 횟수를 언급한 기관은 34개 기관으로 조사되었고 그 중 연 1회로 연간 교육 횟수를 정하고 있는 기관이 32개, 연 2회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은 2개로 조사되었다. 특히 ‘DAP’의 경우 다른 중앙행정기관들과는 달리 전체 청을 대상으로 연 교육 2회, 부서별 대상으로는 반기 1회로 구분지어 지정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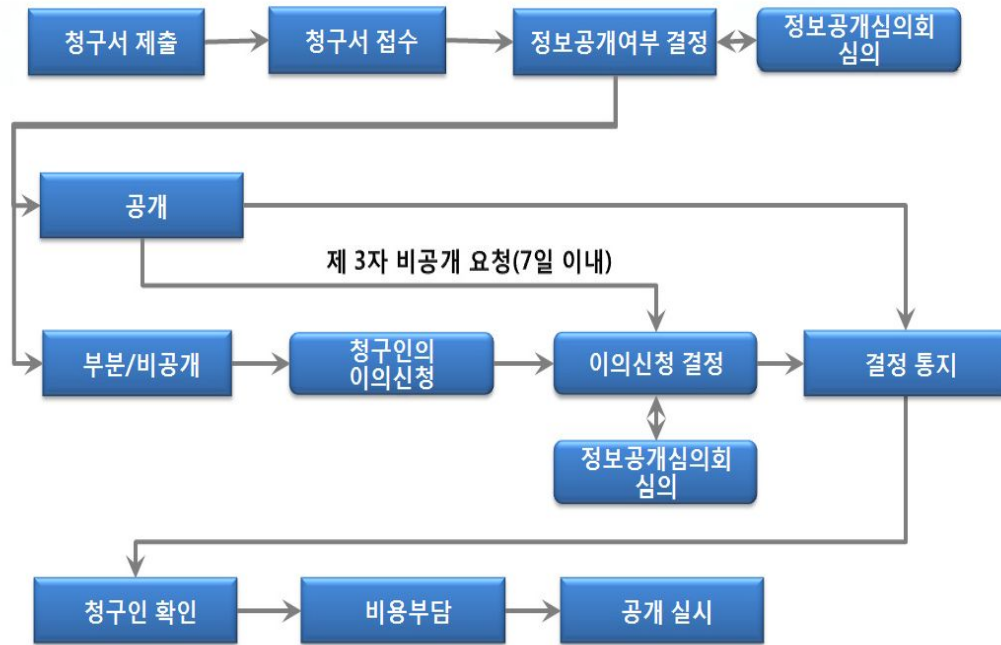
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중앙행정기관 중 43개 기관은 내부 운영 지침을

가지고 있으며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었으나 재검토 기한이 지난 지침을 게재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홈페이지에 내부 운영 규정을 게재하지 않은 2개 기관 중 1개 기관은 내부 운영 규정은 가지고 있으나 홈페이지에 게재하지 않고 있었으며, 1개 기관은 운영 규정 없이 정보공개법을 기준으로 정보공개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중앙행정기관의 대부분 기관이 기관 내 정보공개제도 운영 지침을 가지고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운영 지침의 명칭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었으나 그 내용은 비슷하게 구성되어 있어 명칭이 운영 지침의 내용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관 별 성격과 특성을 반영한 정보공개제도 운영 지침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

2) 정보공개제도 처리 절차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제도는 정보공개법과 기관 별 운영지침을 기준으로 운영된다. 정보공개법 제5조와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3조를 통해 정보공개 청구권자를 모든 국민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해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개대상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이며, 정보공개 대상 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고 있다(정보공개법 제2조). 이에 해당하는 기관은 청구권자의 정보 공개 청구에 따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 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하거나 작성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



<그림 1> 정보공개업무 처리 흐름도

행정자치부. 2014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2014

위 <그림 1>과 같은 절차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고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가 접수되면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청구권자는 ‘대한민국정보공개’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청, 각 기관별 창구, 우편, 팩스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정보공개가 청구되면 해당 기관은 접수, 이송, 공개여부 결정, 결과 통지 등의 단계를 통해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제3자와 관련이 있는 정보공개 청구의 경우 해당 기관은 제3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의견을 청취하여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이유로 10일 이내에 결정을 하지 못한 경우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기관은 반드시 연장된 사실과 그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정보공개법 제10조). 공개 청구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의 사본이나 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

인이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이나 복제물을 제공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개월 이내에 제공을 마쳐야 한다. 또한 정보의 부분공개 및 비공개를 결정하였으면 그에 따른 사유와 불복방법 등을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정보공개법 제13조 제2항,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정보 비공개에 대한 불복구제 절차로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다. 이의신청은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3자도 정보공개법 제21조 제2항을 통해 비공개 요청을 하였음에도 정보공개가 결정되었을 경우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받은 기관에서는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정보공개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정보공개법 제18조).

행정심판은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도 행정심판과 마찬가지로 불복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정보공개법 제19조, 제20조).

2.3 중앙행정기관 정보공개제도 운영 사례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국내외 중앙행정기관의 운영 사례를 조사하여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대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국내 사례로 2015년 정부 3.0 추진 실적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10개 기관 중 농림축산식품부, 미래창조과학부, 산림청, 경찰청, 국가보훈처 5개 기관을 선정하여 운영 사례를 살펴보았다. 국외 사례로는 세계 각 국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정보공개법에 많은 영향을 끼친 미국의 중앙행정기관 중 국무부, 재무부, 국방부, 법무부, 국토안보부 5개 기관을 운영 사례로 선정하였다.

2.3.1 국내

1)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http://www.mafra.go.kr/>)는 홈페이지에서 ‘정부 3.0 정보공개’ 메뉴를 통해 정보공개제도에 접근할 수 있으며 사전정보공개제도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전정보공표’를 선택하여 사용하고 있다. 국민들이 사전정보공개제도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사전정보공표 목록’을 제공하고 있다. 이용자가 정확한 내용과 업무명 등을 알지 못해도 다양한 정보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키워드 검색을 제공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훈령 제152호 ‘농림축산식품부 정보공개운영지침’을 통해 기관 내 행정정보 공개업무를 처리하고 운영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훈령 제6조 “공표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는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의 브리핑룸, 인터넷 정보공개자료방(이하 “공개방”이라 한다), 정책자료집 등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통해 국민들이 정보공개제도에 대해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14년 8월 사전정보공개(공표) 국민의견수렴 설문조사와 2014년 9월 민원 및 정보공개 관련 제도개선 국민제안 공모전을 실시하는 등 국민들의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을 통해 국민들에게 더 가까운 정보공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외식업소의 매출, 고객 수, 영업이익 등 핵심 요소들의 변화를 분석하여 외식업계의 성장과 위축의 정도를 수치화하여 나타내는 지표인 ‘외식업경기지수’를 통해 국내 외식산업의 경기 동향과 향후 전망을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농지은행 포털사이트(<http://www.fbo.or.kr/>)를 통해 전국 농지 실거래가격 정보를 제공하기로 하고 국토교통부로부터 농지 실거래가격을 확보하여 민감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읍면동별 거래 건 및 평균가격, 최고·최저가격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농지를 매도하고자 하는 농업인에게는 농지를 신속히 매도할 수 있도록 하고, 농지를 필요로 하는 귀농·귀촌 희망자들에게는 농지가격 및 매도 물건 정보를 제공하여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창조정부 구현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정부 3.0 우수사례집 중앙행정기관편. 2014).

또한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한국농수산대학’, ‘국립종자원’과 같은 소속기관의 홈페이지의 정보공개제도 메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링크를 제공하고 있다.

2)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http://www.msip.go.kr/>)는 2012년 12월에 분산되어 있는 통신관련 정보를 통합·체계화하고, 이용자들이 본인의 이용패턴에 맞는 최적의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요금정보포털 ‘스마트초이스’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또한 통신정보와 관련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이트를 오픈한 이후 8개월간 일평균 약 3,000명이 방문했고, 누적 인원은 95만 명 정도로 많은 국민이 이용하였다(정부 3.0 우수사례집 중앙행정기관편. 2014).

미래창조과학부는 훈령 제 127호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정보공개지침’을 통해 기관의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 메뉴를 통해 정보공개제도에 접근할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사전정보공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주요정책정보, 대규모예산 사업정보, 행정 감시 필요정보, 그 밖에 주요정보로 구성하여 주제 별로 해당 정보의 업무 및 정책명, 부서명, 공개주기, 공개시기가 정리되어 제공하고 있다. ‘사전정보 모니터링’ 메뉴를 통해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정보목록과 정보공개청구는 ‘대한민국정보공개’홈페이지의 양식을 연계하여 제공하고 있다.

‘무선전화 트래픽 현황’, ‘미래부 반부패청렴 시책’, ‘미래부 공직 유관단체 지정 현황’ 등 총 377개의 사전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민간의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데이터를 2014년까지 약 336종을 개방하였으며 2015년에 57종, 2016년에 11종을 더 개방하는 공공데이터 확대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3) 산림청

산림청(<http://www.forest.go.kr/>)은 ‘등산로 안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산

산림청은 훈령 제 1227호 ‘산림청 정보공개 운영지침’을 통해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정부 3.0 정보공개’ 메뉴를 통해 정보공개제도에 접근할 수 있다. 산림청은 ‘정부 3.0’메뉴를 통해 그간의 주요 성과,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정부,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투명한 정부, 우수사례 모음, 언론에 비친 정부 3.0으로 메뉴를 구성하여 제공함으로써 다른 기관에 비해 정부 3.0을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목록'은 주요정책 및 법령, 산림자원, 산림문화·휴양, 산림소득·일자리, 국유림·산지관리, 산림재난, 산림통계·연구 보고서, 행정 감시로 주제를 구성하고 있고, 주제 별 해당 정보의 정보명, 공개내용과 범위, 주기, 시기, 공표방법, 담당부서·연락처를 제공하고 있다.

즐거찾기 정보

※ 연구자 유형별, 목적별로 분류한 맞춤형 사전정보공개입니다.

▶ 연구자·학생이 즐겨찾는 정보

▶ 산림사업자가 즐겨찾는 정보

▶ 여가생활을 위한 정보

▶ 재난관련 정보

▶ 일자리 정보

▶ 최신 관심 정보

▶ 연구자·학생이 즐겨찾는 정보

정보내용	게시위치/시스템명
산림관련 통계자료	분야별 산림정보/산림통계
산림과학연구보고서	산림과학정보관
식물정보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 국가표준식물목록시스템
산림교육정보	분야별 산림정보/연구·교육
기후변화	분야별정보시스템/산림탄소모아
나무심기	분야별산림정보/산림자원/조림
산림과학지식	국립산림과학원/산림과학지식

▶ 산림사업자가 즐겨찾는 정보

정보내용	게시위치/시스템명
경영컨설팅	단기소득임산물경영 의사결정지원시스템
해 외자원개발사업	분야별산림정보/해외산림자원

<그림 2> 산림청 홈페이지 - 사전정보공개(즐거찾기 정보)

산림청은 <그림 2>와 같이 ‘즐거찾기 정보’를 통해 청구자의 유형과 목적별로 맞춤형 사전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청구자의 유형과 목적을 연구자·학생이 즐겨 찾는 정보, 산림사업자가 즐겨 찾는 정보, 여가생활을 위한 정보, 재난관련 정보, 일자리 정보, 최신 관심 정보로 나누어 제공하고 있다. 또한 ‘청구 공개 자료방’을 통해 산림청에 대한 국민들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기관이 공개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전정보모니터링’을 통해 청구자가 수정·추가해야할 정보, 현행화가 필요한 정보 등에 대해 자유롭게 건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산림청은 2014년까지 총 298건의 산림분야 공공정보를 발표하며 산림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민간의 수요가 높은 산림공공데이터를 개방함으로써 기관의 투명성과 국민의 활용도를 높였다. 또한 ‘정부 3.0 주간 우수사례’ 메뉴를 통해 매주 홈페이지에 정부 3.0의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또한 산림청은 ‘산림박람회 정보’, ‘도시 숲·산림공원 지정현황’, ‘전국수목원 운영 현황’, ‘등산로 및 입산통제 구역 관리’, ‘내산위치 찾기’ 등의 국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4) 경찰청

경찰청(<http://www.police.go.kr/>)은 ‘지명수배·통보자’, ‘사이버범죄’등의 사전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의 안전에 중요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경찰청은 스마트폰과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활용해 간편하게 제보할 수 있는 국민 참여형 목격자 정보공유 시스템을 통해 2014년 행정자치부가 진행한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경찰청은 다른 기관들과는 달리 전반적인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은 정보공개법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훈령 제 765호 ‘경찰청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칙’을 통해 정보공개심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경찰청은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 메뉴를 1) 정보공개제도안내, 2) 사전정보공표, 3) 정보목록(원문), 4) 정보공개청구, 5) 공공데이터개방, 6) 정책실명제, 7) 맞춤형 서비스 선도과제, 8) 맞춤형 치안정보로 구성하여 정보공개

제도를 제공하고 있다. 경찰청은 사전정보공개를 ‘사전정보공표’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정보목록(원문)’은 2014년 3월까지의 정보목록(원문)은 경찰청 홈페이지 내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2014년 4월부터의 기록은 ‘대한민국정보공개’ 포털로 연계하여 제공하고 있다.

5)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http://www.mpva.go.kr/>)는 훈령 제 1016호 ‘국가보훈처 정보공개 운영지침’을 통해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보훈처는 ‘정부3.0 정보공개’ 메뉴를 통해 정보공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가보훈처는 ‘사전정보공개’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주요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정보, 국민의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그 밖의 국민편의 및 알권리 확보를 위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지방보훈관서 행정정보로 주제를 나누어 제공하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역사속 위인들의 보훈 이야기 제작 및 활용보고’, ‘한국독립운동사의 역사 편찬 기념사 보고’, ‘2010 국립묘지 종합감사 결과 통보’등을 사전공개하고 있다. 또한 최근 6개월간의 조회수를 조사하여 국민들이 자주 찾은 정보를 사전정보공개 목록으로 작성하여 제공하고 있다.

또한 ‘문서공개’메뉴를 통해 국가보훈처의 주요 문서 중 공개가 결정된 문서를 원문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처 본부, 유형, 기간별, 주제어 등으로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여 접근성을 높였다. 정보공개청구는 ‘대한민국정보공개’홈페이지로 연계되도록 설정해놓았으며 국가보훈처 OPEN API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2.3.2 국외

1) 미국 국무부

미국 국무부(<http://www.state.gov/>)는 모든 대외관계직무를 수행하고, 조약에 관한 협상, 전 재외공관 지휘, 국제경제정책, 대민외교, 문화교류 시행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미국 국무부에서는 웹사이트 내에 별도로 만들어진 정보공개청구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무부의 메인 홈페이지 하단에 'FOIA' 링크를 통해 'FOIA'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정보공개제도 홈페이지로 연결된다. 정보공개제도 홈페이지에서는 약 114,470건의 검색 가능한 기록물을 제공하고 있다. 국무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록들은 다음과 같다.

- 가) 미국의 외교정책의 집행과 공식입장에 대한 기록
- 나) 국무부와 미국의 대외적 사명에 대한 기능과 행정에 관한 것.
- 다) 해외 거주 미국인에 대한 영사관의 원조에 관한 것.
- 라) 1925년 이전의 여권과 1940년 이전의 비자에 관한 기록은 NARA에서 관리
- 마) 현재와 과거의 국무부 직원들에 관한 기록
- 바) 미국으로 입국하기 위한 외국인의 비자요청에 관한 것

또한 국무부 홈페이지에서는 정보공개 청구에 앞서 정보공개에 제도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비공개 기록에 대한 법적 해제에 관한 검토 등과 같은 내용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관의 정보공개 청구제도의 시행 배경과 정보공개 제공 범위, 사유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여 이해를 돕고 있다. 그 다음 단계로 홈페이지의 검색시스템을 통해 청구자가 원하는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청구자가 찾고자 하는 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을 경우 정보 공개 청구를 요청할 수 있도록 단계화 하여 정보공개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새롭게 공개대상으로 선정된 정보에 대한 소개, 자주 묻는 질

문, 미국 국무부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조례, 대외 업무에 관한 매뉴얼 및 핸드북, 정보 접근 가이드, 기관의 정보공개 접수 현황, 정보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링크화 하여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게끔 제공하고 있다.

2) 미국 재무부

미국 재무부(<http://www.treas.gov/>)는 국내외 재정정책의 수립을 건의하고, 조세정책을 세우며 각종 세금을 징수하고, 화폐 및 국채의 발행과 관리를 담당하며, 국립은행을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미국 국방부는 미국의 군사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육·해·공 3군을 총괄하는 최고 군사 기관이다. 미국 재무부는 소속 기관 홈페이지 외에 별도로 정보공개 홈페이지를 만들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그림 3 참고).



<그림 3> 미국 재무부 정보공개 홈페이지

재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공개 홈페이지 링크를 걸어놓고 이용자가 클릭을 하게 되면 링크 연결을 통해 정보공개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형식이다. 재무부의 정보공개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 하고 있는 정보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가) 온라인으로 정보공개 청구

나) 이미 디지털화 해놓은 자료에 대한 사전정보공개

(1) 판결(파산선고) 과정에서 발생한 최종 의견(동의와 반대의 의견 모두 포함)에 관한 기록

(2).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에는 발행되지 않은 재무부에서 수용한 정책과 그것에 대한 해석에 관한 기록

(3). 대중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직원 관리와 교육, 매뉴얼에 관한 기록

(4). 기존에 정보공개청구 제도에 의해 공개된 기록 중에서 추후에 또 정보공개 요청이 있을 법한 기록에 대해 형식과 매체에 관계없이 모든 기록에 대한 사본을 제공

(5). (4)의 정보에 대한 색인

다) 정보공개제도로 자주 요청된 기록

라) 정보공개청구 작성방법과 정보공개 청구방법에 대해 자주 물어본 질문들

마) 정보공개 담당 부서와 공식 연락처

바)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정보공개 최고 담당자 보고서, 정보공개 계간보고서

사) 개인정보보호법

또한 미국 재무부는 ‘Quick links’ 메뉴를 통해 정보공개 담당자의 연락처, 다른 기관의 정보공개 연락처, 재무국의 정보공개 연락처, 감찰 보고서의 4개 항목을 홈페이지 상에서 제공하고 있다.

3) 미국 국방부

미국국방부(<http://www.defense.gov/>)는 미국의 군사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육·해·공 3군을 총괄하는 최고 군사 기관으로 국방부 건물이 5각형(Pentagon)의 독특한 모양을 하고 있어 펜타곤이라는 애칭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미국의 국방부장관은 미국 3군을 총괄하는 총 사령관의 역할을 맡는다.

국방부 메인 홈페이지 하단에 FOIA 홈페이지의 링크를 연결하여 제공하고 있고 정보공개 메인홈페이지에서 국방부가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게 된 정책적 배

경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정보공개 최고 담당자의 연차보고서와 정보공개 비대상인 정보들에 대해서도 메인 홈페이지에서 바로 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핸드북, 국방부 산하 기관의 정보공개 담당 부서, 국방부의 정보공개 제도 정책에 관한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그림 4 참고).



<그림 4> 미국 국방부 정보공개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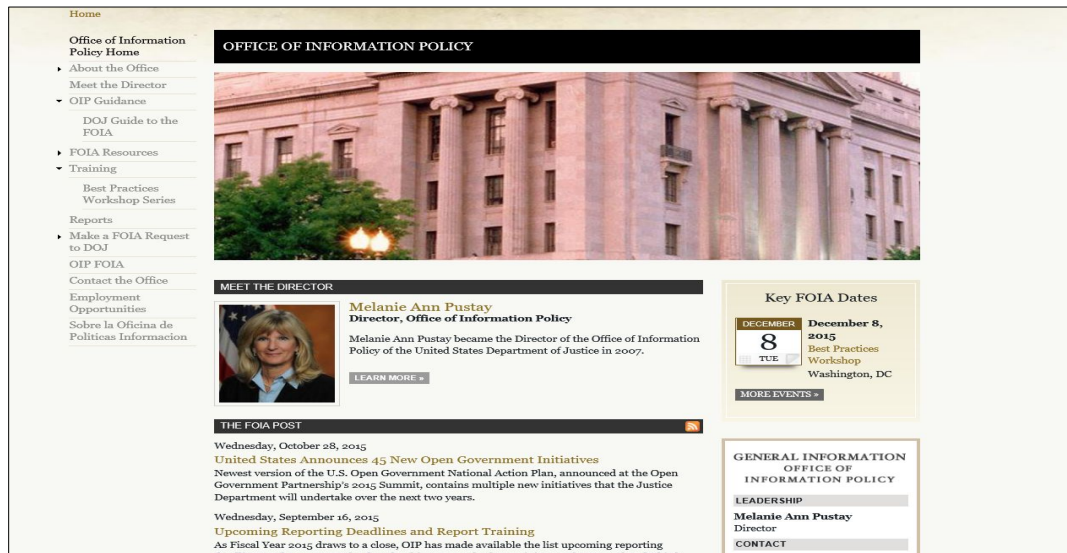
국방부는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정보공개 비대상에 대한 정보 등에 관한 것들을 주로 제공하고 있어 국무부와 재무부와 달리 사전정보공개에 대한 자료들은 거의 없는 편이다.

4) 미국 법무부

미국의 법무부(<http://www.justice.gov/>)는 법정에서, 그리고 법적 문제들이 발생하는 경우에 미국 정부를 대표하며, 대통령과 행정 각부 장관들이 요청할 시에 법적인 자문과 의견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미국 법무부는 메인 홈페이지 FOIA 홈페이지 링크를 제공하여 이를 통해 별도의 정보정책국의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정보공개 홈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홈페이지에서는 부서에 대한 소개, 최고 담당자 소개,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법률적인 가이드 등을 제공하고 있다(그림 5 참고).



<그림 5> 미국 법무부 정보공개 홈페이지

또한 FOIA 트레이닝, 워크샵, 컨퍼런스 일정, 오바마 대통령의 FOIA에 대한 비망록과 법무부 장관의 FOIA 가이드라인, 사전정보공개제도, 절차상의 요건, 정보공개에 대한 요금, 정보공개 예외사항 등에 대해서 목차를 만든 뒤 논문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다른 기관들에 비해 정보공개 청구하는 방법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도 법무부의 특징이다.

5) 국토안보부

미국 국토안보부(<http://www.dhs.gov/>)는 테러로 인한 공격과 자연 재해로부터 미국 국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02년 11월에 설치된 미국 연방 정부의 중앙 행정 기관이며 미국의 국가 안보를 총괄하는 기구이다. 휘하에 국가 안보 및 치안 유지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기구를 집합시켜서 중복 업무를 막고 효율적이고 신속한 국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설립되었다.

국토안보부는 홈페이지 내에서 FOIA 메뉴를 클릭하면 정보공개 홈페이지로 이동하도록 연결하여 별도의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정보

공개청구 가이드라인, 정보공개청구 건의 상태 확인, 정보공개청구 스마트폰 어플, 정보공개 Library, 정보공개제도 담당자 연락처, 정보공개 예외사항, FOIA 관련 법령 및 자료, 정보공개 Library 구독 등으로 메인 FOIA 홈페이지 구성하고 있다(그림 6 참고).



<그림 6> 미국 국토안보부 FOIA 홈페이지

‘정보공개 Library’에서는 판결 과정에서 최종 의견, 특정 에이전시의 정책문, 대중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직원에 대한 교육과 매뉴얼, 정보공개청구에 의해 공개된 정보 중 추후 정보공개 재요청이 있을 법한 정보에 대해 형식과 매체에 관계없이 모든 정보에 대한 사본으로 4개의 카테고리 메뉴를 구성하여 사전정보 공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잦은 정보공개 청구 대상정보들을 따로 모아 주제별로도 분류하여 제공하고 있다.

Ⅲ.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 현황 분석

본 장에서는 정보공개연차보고서를 중심으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기관 변동이 없었던 33개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 청구 현황을 조사하여 정보공개 처리율과 공개율의 운영 추이를 파악하고, 정보공개연차보고서와 홈페이지 조사를 통해 현재 사전정보공개제도와 원문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의 운영 현황을 알아보고자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은 알파벳 약자로 사용하고자 한다.

3.1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 청구 현황

1) 정보공개 처리율 현황

중앙행정기관은 국가의 행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으로서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정부조직법에 의해 설치된 부·처·청만을 의미하지만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치가 가능하다.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해지며, 그 보조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법률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정부조직법 제2조제1항).

2013년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내세운 정부 3.0의 도입으로 국민의 알 권리 신장과 국정 참여에 대한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정보공개 청구건수는 매해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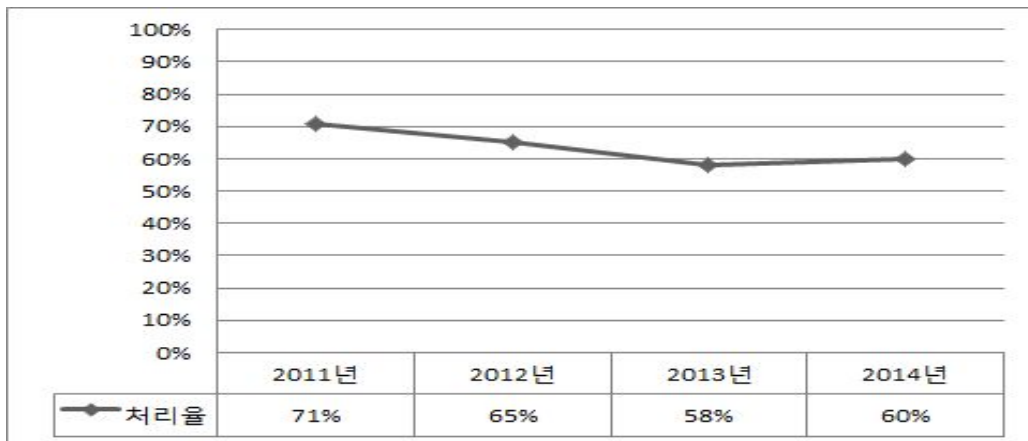
중앙행정기관의 4년 간 정보공개 청구건수를 살펴보면 2011년에는 79,612건에서 2012년 89,359건으로 증가하였으며 2013년에는 114,053건, 2014년에는 121,503건으로 매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2012년에서 2013년 사이에 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전년대비 28%(24,694건 증가)가 증가하여 가장 높은 연간 증가율을 보였는데, 이는 적극적인 정보공개제도를 내세운 정부 3.0 패러다임의 도입으로 인해 국민들의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까닭인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 청구제도 현황에 대한 자료조사는 4년 간 운영 추이 흐름을 파악한 것으로 45개 중앙행정기관 중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기관의 변동이 있었던 기관을 제외한 33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정보공개연차보고서를 중심으로 정보공개청구 현황을 조사하였다. 정보공개 청구제도 현황 조사 대상 기관은 <표 6>과 같다.

<표 6> 처리율 현황 조사 대상 기관

구분	기관명
부(9)	기획재정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처(3)	법제처,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청(15)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대검찰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기상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위원회(5)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원(1)	감사원

위 33개 중앙행정기관에 접수된 정보공개 청구건수 중 취하하거나 민원으로 이첩된 경우, 계류 중(미결정)인 경우 등을 제외하고 중앙행정기관이 전부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로 처리한 결과를 중심으로 한 정보공개 처리율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그림 7과 부록 5 참조).



<그림 7> 중앙행정기관의 4년간 정보공개 처리율 추이

먼저 2011년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건수는 79,612건이었으며 그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이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로 처리한 건수는 56,837건으로 약 71%의 처리율을 보였다. 2012년에는 정보공개 청구건수가 89,359건으로 증가하였고 그 중 58,253건을 처리하여 약 65%의 처리율을 보였다. 2013년 정보공개 청구건수는 114,053건으로 2012년에 비해 청구건수가 급증하였는데 이는 정부 3.0의 도입으로 인한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국민 관심도의 상승 요인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접수된 114,053건의 청구건수 중 66,633건을 처리하여 약 58%의 처리율을 보여 4년 간 처리율 중 가장 낮은 처리율을 보였다. 2014년에는 정보공개 청구건수가 121,503건이었으며 그 중 73,482건을 처리하여 약 60%의 처리율을 보였다(표 7 참고).

<표 7> 중앙행정기관의 4년 간 청구건수 대비 처리건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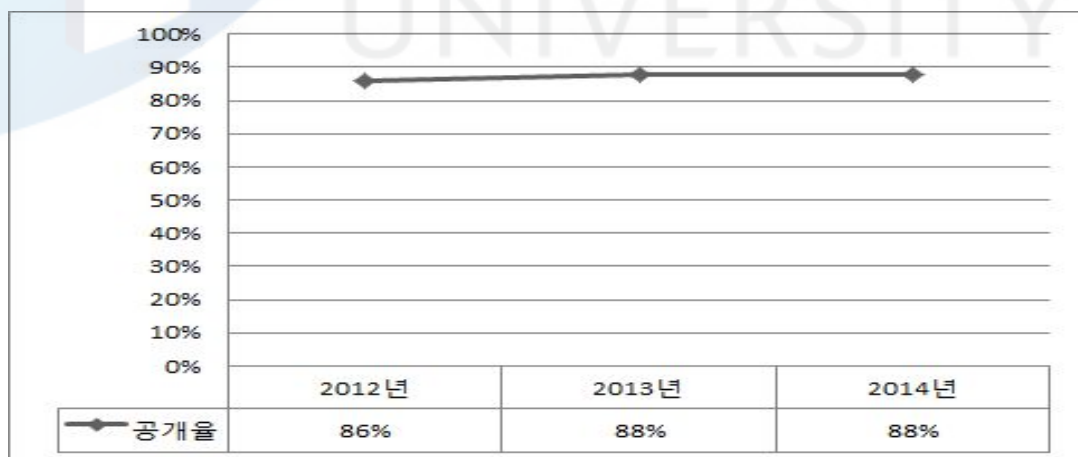
연도	처리건수	청구건수	처리율
2011	56,837건	79,612건	71%
2012	58,253건	89,359건	65%
2013	66,633건	114,053건	58%
2014	73,482건	121,503건	60%

중앙행정기관의 4년 간 정보공개 처리율 현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중앙행정기관은 총 198,971건의 정보공개 청구건수 중 115,090건을 처리하여 약 68%의 처리율을 보였다. 이후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중앙행정기관은 총 235,556건의 정보공개 청구건수 중 140,115건을 처리하여 약 59%의 처리율을 보였다. 이를 통해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내세운 정부 3.0의 도입으로 인해 국민들의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관심도와 청구 건수는 증가하였으나 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은 증가율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정부 3.0의 도입 이후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청구건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처리건수가 그 증가율을 감당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정보 공개율 현황

국민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공공기관은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여부를 결정하여 국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법 제11조에 의거하여 정보공개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 부득이 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은 2011년에는 81%, 2012년에 86%, 2013년에 89%, 2014년에는 88%의 공개율을 보였으며 4년 간 평균 공개율이 86%로 높은 편이었다. 특히 2012년에는 전년대비 약 4% 정도의 공개율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정보부존재의 처리 결과의 변화로 나타난 결과이다. 2011년까지는 정보부존재를 비공개 결정 건수에 포함하여 공개율을 산출하였으나 2012년부터 정보부존재 처리를 비공개 처리건수에서 제외함에 따라 공개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개율 산출 기준이 다른 2011년을 제외하고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약 3년 간 정보공개율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율의 3년 간 추이는 다음과 같다 (그림 8과 부록 6 참조).



<그림 8> 중앙행정기관의 3년간 정보공개율 추이

2012년 중앙행정기관에서 처리한 정보공개 처리건수 중 부분공개와 전부공개로 공개된 정보공개 건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총 58,253건의 처리

건수 중 49,953건을 공개하여 약 86%의 공개율을 보였다. 2012년 정보공개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KMA'로 처리건수 53건 중 53건 모두 공개결정 처리한 것으로 나타나 100%의 공개율을 보였으며 가장 낮은 기관은 'NTS'로 처리건수 4,041건 중 2,039건을 공개 처리하여 약 50.46%의 공개율을 보였다.

2013년에는 중앙행정기관은 총 66,633건의 정보공개 처리건수 중 58,924건을 공개 처리하여 88%의 공개율을 보였다. 가장 높은 공개율을 보인 기관은 'MGL'로 160건 중 159건을 공개 처리하여 약 99.38%의 공개율을 보였고, 'NTS'는 3,889건 중 2,089건을 공개 처리하여 약 53.72%로 가장 낮은 공개율을 보였다.

2014년 중앙행정기관은 총 73,482건의 정보공개 처리건수 중 64,752건을 공개하여 88%의 공개율을 보였다. 가장 높은 공개율을 보인 기관은 'MGL'로 154건 중 154건을 공개 처리하여 100%의 공개율을 보였고, 'NTS'는 3,899건 중 2,243건을 공개 처리하여 약 57.53%로 가장 낮은 공개율을 보였다(표 8 참고).

<표 8> 중앙행정기관의 3년 간 처리건수 대비 공개건수 현황

연도	공개건수	처리건수	공개율
2012	49,953건	58,253건	86%
2013	58,924건	66,633건	88%
2014	64,752건	73,482건	88%

3년 간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율을 조사한 결과 가장 높은 공개율을 보인 기관은 처리건수가 백 단위 이하로 적은 수의 정보공개처리건수를 보인 기관이었고 가장 낮은 공개율을 보인 기관은 처리건수가 천 단위 이상으로 많은 정보공개건수를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보공개 청구건수와 처리건수가 공개율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율은 매년 85% 이상으로 높은 공개율을 보이는 편이지만 다른 공공기관의 공개율이 95% 이상인 것과 비교해보면 낮은 수치

이다. 공개율은 전부공개와 부분공개의 비중이 중요한데 그 이유는 공개 대상인 부분과 비공개 대상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정보일 경우 비공개 대상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는 것을 부분공개로 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청구자가 요구하는 정보가 비공개 부분에 해당되어 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할 경우 기관 입장에서는 부분공개로 보고 공개율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청구자 입장에서는 원하는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기 때문에 비공개로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분공개의 비중이 적고 전부공개의 비중이 높을수록 국민의 만족도가 높은 정보공개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중앙행정기관의 3년 간 정보공개율의 비중을 비교한 표를 제시하면 다음 <표 9>와 같다.

<표 9> 전부공개와 부분공개의 비율 비교

연도	처리건수	공개건수	공개율	전부공개		부분공개	
				건수	%	건수	%
2012년	58,253건	49,953건	86%	41,250건	83%	8,703건	17%
2013년	58,924건	66,633건	88%	49,021건	83%	9,903건	17%
2014년	64,752건	73,482건	88%	53,346건	82%	64,752건	18%

2012년 중앙행정기관은 86%의 정보 공개율을 보였으며 그 중 전부 공개율은 83%, 부분 공개율은 17%로 나타났다. 부분 공개율이 20% 이상을 보인 기관은 ‘SPP’, ‘MPV’, ‘BAI’, ‘MND’, ‘DAP’ 5개 기관으로 조사되었고, 그 중 부분 공개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SPP’로 1,239건의 정보공개 건수 중 412건을 부분공개 처리하여 약 33.25%의 부분 공개율을 보였다.

2013년 중앙행정기관은 88%의 정보 공개율을 보였으며 그 중 전부 공개율은 83%, 부분 공개율은 17%로 나타나 지난 2012년의 비율과 같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적극적인 정보공개의 정부 3.0도입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전부 공개율은 증가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2013년 부분 공개율 20% 이상을 보인 기관 또한 2012년과 마찬가지로 ‘SPP’, ‘MPV’, ‘BAI’, ‘MND’, ‘DAP’ 5개 기관이었으며 부분 공개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BAI’로 227건 중

65건을 부분 공개 처리하여 약 28.63%의 부분 공개율을 보였다.

2014년은 88%의 정보 공개율을 보였으며 그 중 전부 공개율은 82%, 부분 공개율은 18%로 전부공개율의 비중은 감소하고 부분공개율의 비중이 소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부분 공개율 20% 이상을 보인 기관은 ‘MPV’, ‘MEL’, ‘NPA’, ‘MND’, ‘SPP’ 5개 기관이었으며, 부분 공개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MPV’로 1, 862건 중 584건을 부분 공개 처리하여 약 31%의 부분 공개율을 보였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약 3년 간 중앙행정기관의 공개율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중앙행정기관의 3년 간 정보공개율은 매년 85% 이상으로 조사되어 높은 수치를 보였으나 다른 공공기관들이 95% 이상의 공개율을 보이는 것과 비교해볼 때에는 낮은 편이다. 또한 매년 가장 높은 공개율을 보이는 기관과 가장 낮은 공개율을 보이는 기관의 정보공개 처리 건수의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 청구건수와 처리건수가 공개율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공개율 비중에서 전부공개율의 감소와 부분공개율의 증가 추세를 보여 정부 3.0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2 중앙행정기관의 사전정보공개 현황

사전정보공개제도는 정보공개법 제7조 ‘행정정보 공표 등’을 통해 ‘행정정보 공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조사 결과 다수의 기관이 정보공개운영매뉴얼에서 권고하고 있는 ‘사전정보공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사전정보공개’를 채택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정보공개법 제7조 ‘행정정보의 공표 등’에 의거하여 사전정보공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은 행정과정 중 발생한 결과물을 적극적으로 공개하게 되었고 국민은 필요한 정보를 정보공개 청구 과정을 거치지 않고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사전정보공개제도의 공개대상은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행정 감시

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이 외의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로 공공기관은 국민에게 이러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사전정보공개제도를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하지만 정보공개법에는 구체적인 운영 절차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행정안전부(현 행정자치부)에서 2011년 발간한 『정보공개운영매뉴얼』을 통해 사전정보공개 및 정보목록 작성,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과정, 사전정보공개 운영 절차 등을 제시하고 있다. 2011년 이후 정보공개운영매뉴얼의 개정은 이루어진 적이 없으며 조사를 통해 2015년 11월 정보공개운영매뉴얼이 재판 예정임을 알 수 있었다.

중앙행정기관의 사전정보공개제도 운영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대한민국정보공개’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각 기관 홈페이지에 사전정보공개 건수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도 있지만 동일한 데이터 수집을 위해 ‘대한민국정보공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만을 사용하였다. ‘대한민국정보공개’ 홈페이지에서 사전정보공개 건수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 기관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 44개 기관을 제시하면 아래 <표 10>과 같다.

<표 10> 사전정보공개 건수 조사 대상 기관

구분	기관명
부(17)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처(5)	법제처,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청(16)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검찰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기상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실(1)	국무조정실
위원회(5)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공개운영매뉴얼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전정보공개제도 명칭의 통일성을

파악하기 위해 각 기관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정보공개운영매뉴얼에서 홈페이지에서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명칭인 ‘사전정보공개’를 사용하고 있는 기관은 17개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그러나 ‘사전정보공표’를 사용하고 있는 기관이 16개, ‘사전공표정보’, ‘사전정보공표목록’은 각 3개 기관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사전공개정보’, ‘사전행정정보공표목록’, ‘사전공표정보목록’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표 11 참고).

<표 11> 홈페이지 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전정보공개제도 명칭

명칭	기관 수
사전정보공개	17
사전정보공표	16
사전공표정보	3
사전정보공표목록	3
기타	6

‘대한민국정보공개’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정보공개 건수를 조사한 결과 2015년 8월까지의 사전정보공개는 총 140,064건이었으며, 그 중 지방자치단체가 71,317건으로 절반이 넘는 사전정보건수를 공개하고 있었다. 다음으로는 공공기관으로 25,598건으로 많았으며 중앙행정기관은 23,970건, 교육청은 19,179건 순으로 나타났다. 중앙행정기관은 전체 사전정보공개의 약 17%를 차지하고 있어 기관에서 다루고 있는 정보의 중요성에 비해 낮은 수의 정보를 사전공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12 참고).

<표 12> 공공기관 사전정보공개 순위 비교

순위	기관 구분	사전정보공개 건수	비율
1	지방자치단체	71,317건	51%
2	공공기관	25,598건	18%
3	중앙행정기관	23,970건	17%
4	교육청	19,179건	14%

45개 사전정보공개제도 조사대상 기관 중 1개 기관은 ‘대한민국정보공개’ 홈페이지에 사전정보공개 건수 현황을 공개하고 있지 않았으며 나머지 44개 기관만이 사전정보공개제도 현황을 공개하고 있어 사전정보공개 건수 현황은 44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44개 중앙행정기관의 사전정보공개 건수 제공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 <표 13>과 같다(2015.08.31. 기준).

<표 13> 중앙행정기관의 사전정보공개제도 운영 현황(2015. 8. 31 기준)

사전정보공개 건수	기관 수
100건 미만	5
100-200건	10
200-300건	13
300-400건	5
400-500건	6
500-600건	0
600-700건	2
700-800건	0
800-900건	0
900-1000건	0
1000건 이상	3

2015년 8월 31일까지의 사전정보공개 건수 현황을 살펴보면, 100건 미만의 사전정보공개 건수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은 5개 기관, 100건에서 200건 사이의 사전정보공개 건수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은 10개 기관, 200건에서 300건 사이의 사전정보공개 건수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은 13개 기관, 300건에서 400건 사이의 사전정보공개 건수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은 5개 기관, 400건에서 500건 사이의 사전정보공개 건수 제공 기관은 6개 기관, 600건에서 700건 사이의 사전정보공개 건수 제공 기관은 2개 기관, 1000건 이상의 사전정보공개 건수를 제공하는 기관은 3개 기관으로 조사되었다.

조사 결과 사전정보공개 건수를 가장 많이 제공하고 있는 기관은 ‘NPA’로

총 9,590건을 제공하고 있었으며, 가장 적은 정보공개 건수 제공 기관은 13개를 사전정보공개하고 있는 'NSC'로 'NPA'와 약 9,577건의 차이를 보였다.

중앙행정기관의 평균 사전정보공개 건수는 544건으로 평균 사전정보공개 건수 이상을 제공하고 있는 기관은 'MHW', 'MCS', 'MLI', 'MGA', 'NPA'로 단 5개 기관에 불과하였다. 나머지 39개 기관은 평균 사전정보공개 건수인 544건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중앙행정기관의 전체적인 사전정보공개건수가 낮고 균형 있는 제도의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행정기관의 사전정보공개 현황을 살펴본 결과 기관 별 사전정보공개 제공 건수의 격차가 큰 편이었으며 평균 이하의 사전정보공개건수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이 매우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일괄적이고 균형 있는 제도의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3.3 중앙행정기관의 원문정보공개 현황

현 정부는 사전적이고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중점과제로 내세운 정부 3.0 패러다임을 도입하여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비공개 정보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다. 원문정보공개제도는 공무원이 업무 중 생산한 정보를 공개 문서에 대해 별도의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이다. 2014년 3월 중앙행정기관과 시도, 일부 시군구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2015년 3월부터 전자결재시스템을 이용하는 시군구, 시군구, 교육(지원)청도 원문정보공개제도 서비스를 시행하였다. 2016년 3월에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도 원문정보공개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중앙행정기관은 2014년 3월부터 온-나라시스템을 이용하여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 바로 이관되어 공개될 수 있도록 원문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자결재시스템에서 생산되는 원문정보를 정보공개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연계하였다(정부3.0 추진 기본계획, 2013).

2015년 8월 31일까지 원문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지방

자치단체, 교육청, 중앙행정기관이며 ‘대한민국정보공개’ 홈페이지를 통해 각 기관 별 원문 등록건수와 공개건수를 중심으로 원문공개율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아래 <표 14>와 같다.

<표 14> 공공기관 원문공개율 현황 비교표(2015.8.31. 기준)

순위	기관	원문등록건수	원문공개건수	원문공개율
1	지방자치단체	859,970건	578,507건	67.3%
2	교육청	7,829,684건	3,322,329건	42.4%
3	중앙행정기관	58,979건	21,157건	36.0%

공공기관 중 중앙행정기관은 원문정보 등록건수 58,979건 중 21,157건을 공개하여 약 36%의 원문공개율을 보였다. 지방자치단체는 원문정보 등록건수 859,970건 중 578,507건을 공개하여 원문공개율이 약 67.3%로 가장 높았고, 교육청은 7,829,684건을 원문 등록하고 3,322,329건을 원문 공개하여 약 42.4%의 원문공개율을 보였다. 교육청의 경우 2015년 3월부터 원문정보공개 제도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3월부터 원문정보공개제도를 시행하였던 중앙행정기관보다 높은 원문공개율을 보였다.

‘대한민국정보공개’ 홈페이지에서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을 기능과 성격에 따라 수사조사교정, 외교안보, 일반행정, 경제, 사회문화의 범주로 나누어 구분하고 있다. ‘대한민국정보공개’ 홈페이지에서 구분하고 있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의 기능과 성격에 따라 구분한 원문공개율 현황을 제시하면 아래 <표 15>와 같다.

<표 15> 중앙행정기관의 기능과 성격 별 기관 수

구분	기관 수
수사조사교정	6
외교안보	4
일반행정	5
경제	19
사회문화	11

중앙행정기관의 기능과 성격에 따라 5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원문공개율 현황을 조사하여 제시하면 아래 <표 16> 같다.

<표 16> 중앙행정기관의 원문정보공개제도 운영 현황(2015. 8. 31 기준)

기관 성격	기관명 약자	원문등록건수	원문공개건수	공개율
수사조사교정	FTC	712건	59건	8.3%
	SPP	5,975건	529건	8.9%
	BAI	759건	78건	10.3%
	ACC	412건	77건	18.7%
	MOJ	597건	155건	26.0%
	NPA	983건	378건	38.5%
외교안보	MND	2,655건	149건	5.6%
	MFA	3,142건	531건	16.9%
	DAP	1,631건	304건	18.6%
	MOU	394건	153건	38.8%
일반 행정	MPS	4,197건	1,203건	28.7%
	MPM	601건	217건	36.1%
	OGP	183건	77건	42.1%
	MGL	2,761건	1,678건	60.8%
	MGA	1,782건	1,098건	61.6%
	MSF	514건	127건	24.7%
경제	KCS	740건	208건	28.1%
	MLI	1,964건	593건	30.2%
	PPS	1,391건	440건	31.6%
	MOF	1,318건	451건	34.2%
	FSC	339건	119건	35.1%
	SMB	434건	172건	39.6%
	NTS	236건	104건	44.1%
	MAF	1,284건	578건	45.0%
	MSI	1,468건	695건	47.3%

사회복지	MTI	389건	198건	50.9%
	RDA	695건	357건	51.4%
	STK	703건	383건	54.5%
	KIP	1,402건	769건	54.9%
	KAS	313건	172건	55.0%
	KCC	267건	149건	55.8%
	NSC	187건	106건	56.7%
	MAC	392건	236건	60.2%
	KFS	464건	299건	64.4%
	MHW	1,950건	522건	26.8%
	MEL	1,223건	372건	30.4%
	MOE	1,947건	655건	33.6%
	MGE	515건	225건	43.7%
	MFD	441건	196건	44.4%
	MOE	4,132건	1,846건	44.7%
	MPV	1,103건	505건	45.8%
	MCS	1,662건	935건	56.3%
	KMA	886건	507건	57.2%
	CHA	772건	466건	60.4%
	MMA	3,064건	2,086건	68.1%

분석 결과 45개 중앙행정기관의 평균 원문공개율은 36%로 58,979건을 원문등록하여 21,157건을 원문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5개 기관 중 18개 기관은 평균 원문공개율 36%를 넘기지 못하고 있었으며, 50%이상의 원문공개율을 보이는 기관은 15개 기관에 불과하였다. 또한 가장 높은 원문공개율을 보이는 기관과 가장 낮은 원문공개율을 보이는 기관 간의 차이가 62.5%로 나타나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조사 결과 45개 중앙행정기관 중 가장 높은 원문공개율을 보인 기관은 사회복지 성격의 'MMA'로 3,064건의 원문정보를 등록건수 중 2,086건을 원문

공개하여 약 68.1%의 원문공개율을 보였으며, 가장 낮은 원문공개율을 보인 기관은 외교안보 성격의 'MND'로 2,655건의 원문정보등록건수 중 149건을 원문 공개하여 약 5.6%의 원문공개율을 보였다.

중앙행정기관의 성격 별로 살펴보면 먼저, 경제 성격을 가지는 기관의 평균 원문공개율은 약 45.5%로 나타났으며 그 중 'MSF'가 약 24.7%로 가장 낮은 원문공개율을 보였고 'KFS'가 약 64.4%로 가장 높은 원문공개율을 보였다. 사회복지 성격을 가지는 기관의 평균 원문공개율은 약 46.5%로 나타났으며 그 중 'MHW'가 약 26.8%로 가장 낮은 원문공개율을 보였고 'MMA'가 약 68.1%로 가장 높은 원문공개율을 보였다. 수사조사교정 성격을 가지는 기관의 평균 원문공개율은 약 18.5%로 나타났으며 그 중 'FTC'가 약 8.3%로 가장 높은 원문공개율을 보였고 'NPA'가 약 38.5%로 가장 낮은 원문공개율을 보였다. 외교안보 성격을 가지는 기관의 평균 원문공개율은 약 20%로 나타났으며 그 중 'MND'가 약 5.6%로 가장 높은 원문공개율을 보였고 'MOU'가 약 38.8%로 가장 높은 원문공개율을 보였다. 일반행정 성격을 가지는 기관의 평균 원문공개율은 약 45.9%로 나타났으며 그 중 'MPS'가 약 28.7%로 가장 낮은 원문공개율을 보였고 'MGA'가 약 61.6%로 가장 높은 원문공개율을 보였다.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사회복지 성격을 가지는 기관의 평균 원문공개율이 가장 높았고 수사조사교정 성격의 기관의 평균 원문공개율이 가장 낮았다. 또한 경제, 사회복지, 일반행정 성격을 가지는 기관들의 평균 원문공개율이 약 45% 이상을 웃도는 것과 달리 수사조사교정과 외교안보 성격의 기관은 약 20% 이하의 평균 원문공개율을 보여 기관의 성격이 원문공개율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저 원문공개율을 살펴보면 일반행정, 경제, 사회복지 성격을 가지는 기관들의 최저 원문공개율이 20% 이상을 웃도는 것과 비교하여 수사조사교정과 외교안보 성격의 기관은 최저 원문공개율이 한 자릿수를 보였다. 또한 원문공개율 하위 10개 기관 중 외교안보, 수사조사교정의 성격을 가지는 기관이 8개 기관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기관의 기능과 성격이 원문공개율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IV.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제도 분석

4.1 조사 방법 및 내용

본 연구는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현황을 설문 조사하였다. 설문조사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표 17 참고).

<표 17> 설문조사 대상 기관

구분	기관명
부(17)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처(5)	법제처,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청(16)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검찰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기상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실(1)	국무조정실
원(1)	감사원
위원회(5)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8개 기관(1개 부, 1개 처, 4개 청, 2개 위원회)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전 설문(2015년8월19일~8월22일)을 통해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원문정보공개제도’ 관련 문항들을 추가하고 설문지를 수정·보완하였다.

수정·보완한 설문지를 45개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 업무 담당자 45명을 대상으로 2015년 9월 10일부터 2015년 10월 14일까지 E-mail, 전화, 우편, 팩스를 통하여 전체 재배포하였다.

우선 본 연구를 위하여 45명의 업무담당자에게 전화를 통하여 설문조사를 알리고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하였다. 전자우편과 팩스, 우편으로 설문지를 배

포하고 설문참여를 요청하였다. 총 회수된 설문지는 42부로 93%의 회수율을 보였으나 회수된 설문 중 응답이 미비한 설문지 1부를 제외하고 41부를 통계 처리 자료로 선택하여 91%의 회수율로 처리하였다.

설문 내용은 다음과 같이 4개의 분야로 이루어졌다.

첫째, 응답자의 연령과 성별, 정보공개 근무경력, 직렬, 기록관리 업무와 정보공개업무의 겸직 여부, 기관 내 정보공개 업무 담당인력의 수를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둘째,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정책에 관련된 분야이다. 기관에서 정보공개제도와 관련된 지침 및 규정의 유무, 전체 업무량에서 정보공개업무량이 차지하는 비율, 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 횟수 및 위원 구성, 정보공개심의회의 개최사유 및 개최 유형 등을 묻는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셋째, 정보공개와 비공개에 관련된 분야이다. 정보공개와 비공개를 결정하는 기준의 우선순위, 비공개 결정처리 기한 미준수 건수의 비중, 부적정한 비공개 최소화 제도의 여부, 정보공개모니터단의 실시여부 및 영향력, 이용자유구를 파악할 수 있는 제도의 유무 등 비공개의 최소화와 관련된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넷째, 정보공개제도의 사전적·적극적 공개와 관련된 분야이다. 사전정보공개 목록 게재 여부, 사전정보공개 운영가이드 참고여부, 원문공개제도를 수행하는 데 있어 어려운 점 등 사전정보공개와 원문공개제도와 관련된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다섯째,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체계적인 기반과 관련된 분야이다. 정보공개제도를 위한 전담부서의 유무, 장소 확보 유무, 정보공개 업무담당인력의 적절성, 처리과 내 지도 점검 횟수, 기관 내 정보공개 업무 관련 교육 횟수를 묻는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여섯째, 정보공개 업무담당자의 인식과 관련된 분야이다. 업무담당자의 이해도 및 관심도, 필요성 인식 정도, 업무스트레스 및 부담감 등을 묻는 질문으로 구성하였다(표 18 참고).

<표 18> 45개 중앙행정기관 정보공개 업무담당자 설문조사 항목

조사 영역	항목	문항 수
일반사항	- 연령 - 성별 - 정보공개제도 근무경력 - 직렬 - 기록관리업무와 정보공개업무 겸직 여부 - 담당인력 수	6문항
운영 및 정책	- 내부 지침 및 규정 유무 - 정보공개업무 업무량 - 홈페이지 내 정보목록 제공 여부 - 정보목록의 정보공개업무량 축소 기여 정도 - 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 횟수 및 위원 구성 - 정보공개심의회의 개최사유 및 개최 유형	9문항
비공개의 최소화	- 정보공개 범위 결정 및 결정 기준 우선순위 - 비(부분)공개 결정처리 기한 미준수 비중 - 부적정한 비공개 최소화 제도 여부 - 정보공개모니터단 실시여부 및 영향력 - 이용자요구 파악 제도 유무	9문항
사전적·적 극적 공개	- 사전정보공개 목록 게재 여부 - 사전정보공개 운영가이드 참고여부 - 사전정보공개 홈페이지 게재 전 평가 여부 - 내부 규정 및 지침 내의 사전정보공개 - 사전정보공개에의 긍정적 측면 - 원문정보공개 수행 시 어려운 점 - 원문정보공개에의 긍정적 측면	10문항
체계적인 기반마련	- 정보공개 전담부서 유무 - 정보공개 업무담당인력의 적절성 - 정보공개업무 장소확보 여부 - 처리과 대상 지도점검 여부 - 기관 내 정보공개제도 연간 교육 횟수	5문항
인식조사	- 이해도 및 관심도 - 중요성 및 적절성 - 필요성 인식 정도 - 업무 스트레스 및 환경 - 책임감 및 만족도 - 정보공개 업무 수행 시 불만족 사항	18문항
계		57문항

4.2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제도 담당자 설문지 분석

설문지 분석은 SPSS 22.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첫째, 중앙행정기관 정보공개 업무 담당자의 일반적 특성 및 운영 현황에 대해 빈도, 백분율, 평균, 카이제곱 검정, T-검정과 같은 기술 통계방법을 사용하였다.

둘째, 정보공개제도 운영 현황과 인식의 정도, 제도 및 기능 개선에 대한 필요성 인식 등의 항목은 직렬, 근무경력에 따라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 카이제곱검증(χ^2 test)과 T검증(t-test)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데이터의 통계분석은 유의수준 $p < .05$ 에서 검증하였다. 카이제곱검증은 ‘근무경력에 따라 제도 및 기능 개선에 대한 필요성 인식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연구 가설 하에 검증을 실시하였다. T검증(t-test) 또한 ‘직렬과 근무경력에 따라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에 유의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라는 연구 가설 하에 검증을 실시하였다.

셋째, 정보공개 업무담당자의 만족도와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 분석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통계분석은 유의수준 $p < .05$ 에서 검증하였다.

4.2.1 업무담당자의 일반적인 사항

설문에 응답한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 업무담당자의 일반적 사항은 <표 19>와 같다. 응답자 중 30대와 40대가 각 18명(43.9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50세 이상 4명(9.76%), 20대 1명(2.44%)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성별은 여성이 22명(53.70%), 남성이 19명(46.34%)이었다. 프로그램담당자의 근무경력은 7년 이상이 16명(39.02%)으로 가장 많았고 1년 이하가 9명(21.95%), 1년 이상~3년 미만이 9명(21.95%), 3년 이상~5년 미만이 5명(12.20%), 5년 이상~7년 미만이 2명(4.88%)으로 나타났다.

정보공개 업무담당자의 직렬은 기록연구직이 23명(56.10%), 행정직이 12명(29.27%), 전산직이 1명(2.44%), 기타가 5명(12.20%)으로 나타났다. 정보공

개 업무는 기록연구사 직렬이 가장 많이 담당하고 있었으며, 행정직과 전산직도 담당하고 있고 기타 직렬에는 사서직도 포함되어 있어 다양한 직렬이 정보공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기록관리 업무와 정보공개업무를 겸직하는 경우는 22명(53.66%), 겸직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19명(46.34%)으로 나타나 기록관리 업무와 정보공개업무를 겸직하고 있는 기관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록연구직이라고 응답한 수는 23명이었으나 정보공개업무와 겸직하고 있다는 응답자 수는 22명으로 나타나 기록연구직의 경우 대다수가 정보공개업무를 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기관에서 정보공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력의 수는 1명이 30명(73.17%)로 가장 많았고 2명이 9명(21.95%), 3명이 2명(4.88%)으로 나타나 기관 별 정보공개 업무 담당 인력의 배치가 매우 적은 편으로 조사되었다.

<표 19> 정보공개 업무담당자의 일반적 특성

문항	구분	빈도(퍼센트%)
연령	30-39세	18(43.90)
	40-49세	18(43.90)
	50세 이상	4(9.76)
	20-29세	1(2.44)
	계	41(100.00)
성별	여자	22(53.66)
	남자	19(46.34)
	계	41(100.00)
근무경력	7년 이상	16(39.02)
	1년 이하	9(21.95)
	1년~3년	9(21.95)
	3년~5년	5(12.20)
	5년~7년	2(4.88)
	계	41(100.00)

직렬	기록연구직	23(56.10)
	행정직	12(29.27)
	전산직	1(2.44)
	기타	5(12.2)
	계	41(100.00)
겸직여부	그렇다	22(53.66)
	그렇지 않다	19(46.34)
	계	41(100.00)
담당인력	1명	30(73.17)
	2명	9(21.95)
	3명	2(4.88)
	계	41(100.00)

4.2.2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정책에 관한 사항

본 장의 설문을 통해 앞선 현황 조사와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운영 및 정책에 관한 사항에 대한 설문을 통해 나온 결과를 비교하여 실제 중앙행정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정보공개제도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45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현황 조사에서 43개의 중앙행정기관이 기관 내의 내부 지침 및 규정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황 조사 결과와 실제 운영 현황을 비교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에서 정보공개제도를 위한 내부 지침 및 규정을 갖추고 있는지 묻는 설문 결과는 <표 20>과 같다.

<표 20> 기관 별 내부 지침 및 규정 유·무

구분	빈도(퍼센트%)
내부 지침 및 규정을 갖추고 있다	41(100.00)
내부 지침 및 규정을 갖추고 있지 않다	-
사례 수	41(100.00)

응답자 41명(100%) 모두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모든 기관이 내부 지침 및 규정을 갖추고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현황 조사를 통해 홈페이지에 내부 지침 및 규정이 게재되어 있지 않다고 조사되었던 1개 기관도 설문 결과를 통해 내부 지침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설문을 통해 기관이 운영 지침을 갖추고 있더라도 내부 사정에 의해 홈페이지에 운영 지침을 게재하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설문응답자의 정보공개업무량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한 설문 결과는 <표 21>과 같다.

설문응답자가 담당하고 있는 전체 업무 중에서 정보공개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을 조사한 결과 31~50%를 차지한다는 응답자가 15명(36.59%)으로 가장 많았고, 11~30%가 9명(21.95%), 51~70%가 9명(21.95%), 70% 이상이 4명(9.76%), 10%이하가 4명(9.76%)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전체 업무 중 정보공개 업무 수행 비중이 30% 이하를 차지한다는 응답자는 13명(31.71%), 31-50%라고 응답한 수는 15명(36.59%), 50% 이상을 차지한다는 응답자는 13명(31.71%)으로 나타나 기관마다 업무량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1> 전체 업무 중 정보공개 업무량 비중

구분	빈도(퍼센트%)
10% 이하	4(9.76)
11% - 30%	9(21.95)
31% - 50%	15(36.59)
51% - 70%	9(21.95)
70% 이상	4(9.76)
사례 수	41(100.00)

정보공개제도가 누구의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는 다음 <표 22>와 같다. 행정직이 정보공개제도를 담당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수는 12명(29.27%), 기록연구직과 행정직의 분담이 좋다고 응답한 수는

12명(29.27%)으로 행정직을 포함하고 있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록연구직이 9명(21.95%), 기타 의견이 8명(19.51%)으로 나타났으며 기타로는 민원 부서, 정보공개 전담 부서의 신설, 전문 인력의 배치 등이 있었다. 즉 정보공개 업무담당자 중 정보공개제도를 행정직의 업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기록연구직의 고유 업무라고 인식하는 경우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응답자 수의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 정보공개 업무 담당 주체에 대한 인식

구분	빈도(퍼센트%)
행정직(정보공개 담당자)	12(29.27)
기록연구직과 행정직의 분담	12(29.27)
기록연구직	9(21.95)
기타	8(19.51)
사례 수	41(100.00)

다음 <표 23>은 각 기관별 홈페이지에서 정보목록 제공에 관한 설문을 한 결과이다. 각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목록을 제공하고 있는가를 조사한 결과 정보목록을 제공하고 있다고 응답한 수는 40명(97.56%),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수는 1명(2.44%)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수의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법 제8조제1항(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에 근거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목록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23> 기관 별 홈페이지 상 정보목록 제공 여부

구분	빈도(퍼센트%)
정보목록을 제공하고 있다	40(97.56)
정보목록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	1(2.44)
사례 수	41(100.00)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5조를 통해 문서제목·생산연도·업무담당자·보존기간을 포함한 정보목록과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 절차, 정보공개 청구서식,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 등의 정보목록을 갖추어 국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홈페이지에 정보목록을 제공하는 것이 정보공개업무량 축소에 도움을 주는지를 조사한 결과는 아래 <표 24>와 같다. 설문 결과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13명(31.71%)으로 가장 많았고 ‘전혀 그렇지 않다’가 12명(29.27%), ‘그렇지 않다’가 11명(26.83%) 순으로 나타났다.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부정적 의견을 가진 응답자 수가 23명(56.10%)인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정보공개 업무담당자들은 정보목록 제공이 정보공개업무량 축소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 정보목록 제공이 정보공개업무량 축소에 미치는 영향의 인식 정도

구분	빈도(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2(29.27)
그렇지 않다	11(26.83)
보통이다	13(31.71)
그렇다	3(7.32)
매우 그렇다	1(2.44)
무응답	1(2.44)
사례 수	41(100.00)

위 두 설문을 통해 정보목록을 제공하고 있는 기관은 40개 기관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대부분의 응답자는 정보목록 제공이 정보공개업무량 축소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정보목록 제공이 정보공개 업무담당자의 업무량 축소에 영향을 많이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정보공개 여부,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등의 정보공개제도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의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과 관련된 항목들이다.

먼저 각 기관별로 1년 동안 실시하고 있는 정보공개심의회의 평균 운영횟

수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 <표 25>와 같다.

<표 25> 기관 별 연간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횟수

구분	빈도(퍼센트%)
4번 이상	17(41.46)
2번	9(21.95)
1번	8(19.51)
3번	5(12.20)
하지 않는다	2(4.88)
사례 수	41(100.00)

4번 이상 정보공개심의회를 운영한다고 응답한 수가 17명(41.46%)으로 가장 많았고 2번 운영한다는 응답자가 9명(21.95%), 1번 운영한다는 응답자가 8명(19.51%), 3번 운영한다는 응답자가 5명(12.20%),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수는 2명(4.88%)으로 나타났다. 4번 이상 정보공개심의회를 운영한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은 이유는 2013년 정보공개법 개정을 통해 이의신청 접수 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의무화하였기 때문으로 유추된다. 그러나 1년에 한 차례도 정보공개심의회를 운영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도 2명으로 나타나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이 불균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는 주된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 조사한 결과는 아래 <표 26>과 같다.

<표 26>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사유

구분	빈도(퍼센트%)
이의신청	40(97.56)
결정곤란	1(2.44)
사례 수	41(100.00)

이의신청 접수로 인해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한다는 응답자가 40명

(97.56%)으로 가장 많았고 결정곤란으로 인한 개최가 1명(2.44%)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 정보공개법 개정으로 명시된 이의신청 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의무화(제11조제2항)를 준수하고 있는 기관이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정보공개심의회는 정보공개법 제12조제2항에 의거하여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심의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소속 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하며, 그 중 2분의 1은 해당 국가 기관 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은 외부 전문가의 위촉 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으나 최소한 3분의 1은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정보공개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구성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45개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구성을 묻는 설문 결과는 다음 <표 27>과 같다.

<표 27>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구성 비율

구분			빈도(퍼센트%)
구분	내부위원	외부위원	
내부위원 수가 더 많다	4명	3명	25(60.98)
	3명	2명	5(12.20)
	4명	2명	1(2.44)
	5명	2명	2(4.88)
	7명	3명	1(2.44)
같다	3명	3명	1(2.44)
외부위원 수가 더 많다	3명	4명	3(7.32)
	2명	5명	1(2.44)
무응답			2(4.88)
사례 수			41(100.00)

정보공개심의회의 위원 구성을 조사한 결과 40명(95.14%)의 응답을 통해 40개 기관이 정보공개법 제12조제2항의 위원 구성 수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1명(2.44%)의 응답을 통해 1개 기관은 총 10명의 위원을 구성하고 있어 정보공개심의회의 위원 구성을 준수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공개법 제12조제3항에서는 심의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2분의 1은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는 3분의 1 임명). 기관 별로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위원 중 내부위원의 수가 외부위원의 수보다 더 많은 기관은 34개(82.94%) 기관으로 나타났으며, 외부위원의 수가 더 많은 기관은 4개(9.76%) 기관,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의 수가 같은 기관은 1개(2.44%) 기관으로 나타났다. 설문 조사 결과 이 조항을 준수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기관은 35개(85.38%) 기관으로 조사되었다.

위원장을 포함한 내부위원의 평균 인원은 약 3.85명, 외부위원의 평균 인원은 약 2.92명으로 나타나 정보공개심의회의 위원 비중은 약 4 : 3 정도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중앙행정기관의 평균 위원 구성에서 외부위원의 수보다 내부위원의 수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정보공개법 제12조제3항을 통해 규정하고 있는 정보공개심의회의의 위원 구성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정보공개심의회의의 개최 유형의 비율을 조사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정보공개심의회의는 대면심의와 서면심의 두 가지 유형으로 개최되는데, 조사 결과 서면심의의 유형이 더 많다고 응답한 수는 23명(56.11%), 대면심의의 유형이 더 많다고 응답한 수는 7명(17.08%), 서면심의와 대면심의의 비율이 같다고 응답한 수는 8명(19.51%)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 중 서면심의와 대면심의의 비율이 100 : 0 이라고 응답한 수는 14명(34.15%), 0 : 100 이라고 응답한 수는 4명(9.76%)으로 나타나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의 개최 유형의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28 참고).

또한 서면심의를 개최의 평균 비율이 약 66.46%로 나타났고 대면심의를 개최의 평균 비율이 약 33.54%로 나타나, 서면심의를 중심으로 정보공개심의회의가 운영되고 있어 정보공개심의회의의 개최 본질인 의견 조정과 논의가 제대로 이

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28>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유형 비율

구분		빈도(퍼센트%)
서면심의 (%)	대면심의%	
100	0	14(34.15)
90	10	2(4.88)
80	20	2(4.88)
70	30	2(4.88)
71	29	1(2.44)
64.3	35.7	1(2.44)
60	40	1(2.44)
50	50	8(19.51)
30	70	1(2.44)
10	90	2(4.88)
0	100	4(9.76)
무응답		3(7.32)
사례 수		41(100.00)

정보공개심의회는 단순한 운영 형식보다는 회의 결과 내용을 살펴보고 분석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며, 서면심의를 개최할 수 있는 허용 조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유형을 엄격하게 관리해 개최 유형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2.3 정보공개제도의 비공개 최소화에 관한 사항

다음은 정보공개제도의 비공개 최소화와 관련된 사항들을 묻는 설문이다. 기관 별로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되면 정보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하는 역할을 누가 수행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한 설문의 결과는 <표 29>와

같다.

<표 29> 정보공개 여부 및 범위 결정 담당

구분	빈도(퍼센트%)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선정	26(63.41)
정보공개 업무담당자와 부서와의 의견 조율	15(36.59)
정보공개 업무담당자	—
기타	—
사례 수	41(100.00)

41명의 응답자 중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선정하여 결정한다는 응답자 수가 26명(63.41%), 정보공개 업무담당자와 부서와의 의견 조율을 통해 정보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한다는 응답자가 15명(36.59%)으로 나타났다.

정보공개의 여부 및 범위를 누가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는가를 조사하기 위해 설문한 결과는 다음 <표 30>과 같다.

<표 30> 정보공개 여부 및 범위 결정 담당에 대한 인식

구분	빈도(퍼센트%)
각 부서의 생산자	20(48.78)
정보공개 업무담당자와 부서와의 의견 조율	19(46.34)
정보공개 업무담당자	1(2.44)
기타	1(2.44)
사례 수	41(100.00)

각 부서의 생산자가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응답자가 20명(48.78%), 정보공개 업무담당자와 부서와의 의견 조율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응답자가 19명(46.34%), 정보공개 업무담당자가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응답자가 1명(2.44%), 기타 의견이 1명(2.44%)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정보공개 전담부서 통한 체계적인 업무수행이 필요하다고 조사되었다.

두 설문을 통해 정보공개 여부 및 범위 결정에 있어 정보 생산부서가 결정

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이 가장 많으며 그것이 옳다고 인식하는 응답자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공개 여부 및 결정 담당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정보공개 업무담당자와 부서와의 의견 조율이 19명(46.34%), 정보공개 업무담당자가 1명(2.44%)으로 나타나 정보공개 결정과정에 있어 정보공개 업무담당자의 역할을 비교적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표 31>은 정보공개 범위를 결정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참고하는 기준을 알아보기 위해 참고 기준의 우선순위를 조사한 결과이다. 35명(85.37%)의 응답자가 정보공개법 및 운영 지침을 참고 기준 1순위로 꼽았고, 3명(7.32%)이 각 부서의 의견, 2명(4.88%)이 정보공개제도 업무담당자의 의견, 1명(2.44%)이 기관의 정보공개 운영 지침 및 규정을 우선순위로 꼽았다.

<표 31> 정보공개 범위 결정 시 기준 우선순위(1순위)

구분(1순위)	빈도(퍼센트%)
정보공개법 및 운영 지침	35(85.37)
각 부서의 의견	3(7.32)
정보공개제도 업무 담당자의 의견	2(4.88)
무응답	1(2.44)
사례 수	41(100.00)

*우선순위(1순위)

이를 통해 가장 많은 기관이 정보공개법을 기준으로 정보공개의 범위를 결정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는 각 부서의 의견, 정보공개제도 업무담당자의 의견 순으로 정보공개 범위를 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보공개제도 업무담당자의 의견을 1순위 기준으로 삼는다는 응답자도 있어 정보공개 업무담당자의 역할이 정보공개 범위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기관에서 10일 이내에 비(부분)공개 결정처리를 내리지 못하는 비율을 묻는 설문 결과는 <표 32>와 같다.

<표 32> 비(부분)공개 결정처리 기한 미 준수 비율

구분	빈도(퍼센트%)
10% 이하	36(87.80)
11-20%	4(9.76)
21-30%	-
31-40%	-
그 이상	-
무응답	1(2.44)
사례 수	41(100.00)

비(부분)공개 결정처리 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비율이 10%이하라고 응답한 수는 36명(87.80%), 11~20%라고 응답한 수는 4명(9.76%)으로 나타나 40개 기관이 공개 결정처리를 10일 이내에 내리는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기관이 신속한 정보공개업무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41개 중앙행정기관의 결정처리 기한 미준수 비율을 정보공개연차보고서를 통해 현황 조사한 결과는 설문 결과와 다른 양상을 보였다. 기한 미준수 비율이 20% 이상으로 나타난 기관이 3개(7.3%) 기관, 10-20%로 나타난 기관이 10개(24.4%) 기관, 10% 이하로 나타난 기관이 28개(68.3%) 기관으로 나타났다(부록 9 참고). 설문 조사 결과 기한 미준수 비율이 20% 이상이라고 응답한 수는 한 명도 없었으나 현황 조사를 통해 3개(7.3%) 기관의 기한 미준수 비율이 2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결과의 차이를 보였다.

비(부분)공개 결정처리 기한을 준수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로는 정보공개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청구량이 과다하게 많은 경우, 업무량이 과다하게 많은 경우, 정보공개 대상 자료 취합이 오래 걸리는 경우, 담당자가 출장이나 휴가로 공석인 경우, 제3자 의견청취가 필요한 경우, 각 부서 업무 처리자가 처리를 지연시킬 경우, 업무담당자가 정보공개업무에 미숙할 경우, 기관 내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낮을 경우 등으로 나타났다.

기관에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개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보공개법 제13조제4항에 의거하여 비공개 사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비공개 결정시 청구인에게 매년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가를 조사한 결과는 아래 <표 33>과 같다.

<표 33> 비공개 결정 시 사유 제공 여부

구분	빈도(퍼센트%)
비공개 사유를 매번 제시한다.	41(100.00)
비공개 사유를 매번 제시하지 않는다.	-
사례 수	41(100.00)

설문 결과 41명(100%)의 응답자 모두가 비공개 사유를 매번 제시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모든 중앙행정기관에서 비공개 결정시 법적 근거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표 34>는 각 기관에서 부적정한 비공개를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 중인 제도가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이다.

<표 34> 기관 별 부적정한 비공개 최소화 제도 운영 여부

구분	빈도(퍼센트%)
비공개 최소화를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	29(70.73)
비공개 최소화를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1(26.83)
무응답	1(2.44)
사례 수	41(100.00)

기관 내에서 비공개 최소화를 위해 운영 중인 제도가 없다고 응답한 수가 29명(70.73%), 비공개 최소화를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응답한 수가 11명(26.83%)으로 나타나 중앙행정기관 내에 부적정한 비공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운영이 미비한 실정임을 알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은 기관의 특성상 국가 기밀이나 주요 문서들을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 차원에서 비공개 정보를 규정하는 데 있어 구체적인 규정을 만들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공개 최소화를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응답한 11명(26.83%)을 대상으로 추가 설문을 실시한 결과는 <표 35>와 같다.

<표 35> 비공개 최소화를 위해 운영 중인 제도

구분	빈도(퍼센트%)
비공개시 국장급 이상 결재	4
비공개세부기준 판례 및 지침	4
기관 조직 평가에 정보공개지표 포함	1
정보공개 모니터링	1
비공개 결정 시 결재과정에 정보공개 업무담당자 자문을 통한 적절성 검토	1

*복수응답

비공개 결정시 국장급 이상 결재, 비공개세부기준 판례 및 지침을 통해 정보 비공개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각 4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기관 조직 평가에 정보공개지표를 포함한다는 응답자가 1명, 정보공개 모니터링이 1명, 비공개 결정 시 결재과정에 정보공개 업무담당자 자문을 통한 적절성 검토가 1명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중앙행정기관에서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와 의견 파악을 위해 운영 중인 제도에 관련한 설문들이다.

먼저 사전정보공개제도의 감독기능을 하는 ‘정보공개 모니터단’의 실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31명(75.61%)이 운영해 본 적이 있다, 9명(21.95%)이 운영해 본 적이 없다고 응답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제도 운영이 불균형함을 알 수 있었다(표 36 참고).

<표 36> 정보공개 모니터단 실시 여부

구분	빈도(퍼센트%)
정보공개 모니터단을 운영해본 적이 있다	31(75.61)
정보공개 모니터단을 운영해본 적이 없다	9(21.95)
무응답	1(2.44)
사례 수	41(100.00)

또한 ‘정보공개 모니터단’이 정보공개업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한 결과는 아래 <표 37>과 같다. 설문 결과 ‘보통이다’가 23명(56.10%), ‘그렇다’가 9명(21.95%), ‘그렇지 않다’가 6명(14.63%), ‘매우 그렇다’가 1명(2.44%) 순으로 나타났다.

<표 37> 정보공개 모니터단의 운영 효과

구분	빈도(퍼센트%)
매우 그렇다	1(2.44)
그렇다	9(21.95)
보통이다	23(56.10)
그렇지 않다	6(14.63)
전혀 그렇지 않다	—
무응답	2(4.88)
사례 수	41(100.00)

두 설문을 통해 중앙행정기관 중에서 ‘정보공개 모니터단’을 실시했던 기관이 과반수 이상으로 조사되었으나 ‘정보공개 모니터단’이 정보공개업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수는 10명(24.39%)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보공개 모니터단’ 운영을 통해 많은 효과를 얻지 못했다고 인식하는 업무담당자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정보공개 모니터단’이외의 이용자의 요구 혹은 의견을 파악할 수 있는 제도의 운영 여부를 조사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응답자 중 기관 내에서 이용자의 의견 파악제도를 갖추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수가 30명(73.17%), 의견 파악제도를 갖추고 있다고 응답한 수가 10명(24.39%)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중앙행정기관에서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이용자의 요구나 의견을 파악할 수 있는 제도의 운영이 미비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기관 내 이용자의 의견을 파악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고 있다고 응답한 10명(24.39%)을 대상으로 추가 설문을 실시한 결과 소속 기관의 홈페이지 게시판 활용, 소속 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설문조사 실시, 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 참고, 자체 모니터링 실시 등을 통해 이용자의 요구와 의견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8 참고).

<표 38> 기관 내 의견 파악 제도 유·무

구분	빈도(퍼센트%)
의견 파악 제도를 갖추고 있지 않다	30(73.17)
의견 파악 제도를 갖추고 있다	10(24.39)
무응답	1(2.44)
사례 수	41(100.00)

한편 의견 파악 제도를 갖추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30명(73.17%)을 대상으로 추가 설문을 실시한 결과 의견 파악 제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수는 14명(46.67%),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수는 13명(43.33%)으로 나타났다.

위 세 설문을 통해 ‘정보공개 모니터단’ 운영을 통해 정보공개업무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한 수는 매우 적었다. 이를 통해 정보공개 업무담당자가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이용자의 의견이나 요구를 파악할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을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4.2.4 정보공개제도의 사전적·적극적 공개에 관한 사항

다음은 적극적인 정보공개제도를 위한 사전정보공개제도와 원문정보공개제도에 관련한 설문들이다.

먼저 각 기관 별로 홈페이지에 사전정보공개 목록을 게재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표 39>와 같다.

<표 39> 기관 별 홈페이지 사전정보공개 목록 게재 여부

구분	빈도(퍼센트%)
사전정보공개 목록을 게재하고 있다	41(100.00)
사전정보공개 목록을 게재하고 있지 않다	—
사례 수	41(100.00)

응답자 41명(100%) 모두가 사전정보공개 목록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의거하여 종합목록을 작성하여 게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사전정보공개 대상을 발굴할 시 사전정보공표 운영가이드의 가이드라인을 따라 발굴하고 있는가를 조사한 결과 38명(92.68%)이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2명(4.88%)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표 40 참고).

<표 40> 사전정보공표 운영가이드 참고 여부

구분	빈도(퍼센트%)
운영가이드대로 발굴하고 있다	38(92.68)
운영가이드대로 발굴하고 있지 않다	2(4.88)
무응답	1(2.44)
사례 수	41(100.00)

사전정보공표 운영가이드를 참고하지 않고 발굴하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사전정보공개 대상정보 발굴의 기준을 추가 설문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관심사항, 잦은 정보공개청구 대상을 사전정보공개 대상 정보로 발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정보공개 대상정보를 발굴한 뒤 소속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하기 전 평가 제도를 거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수는 27명(65.85%), 그렇다고 응답한 수는 12명(29.27%)으로 나타났다(표 41 참고).

<표 41> 사전정보공표 운영가이드 준수 여부

구분	빈도(퍼센트%)
평가 제도를 거친 뒤 게재한다	27(65.85)
평가 제도를 거치지 않고 게재한다	12(29.27)
무응답	2(4.88)
사례 수	41(100.00)

위 세 설문 결과를 종합해보면 설문에 응한 모든 중앙행정기관이 홈페이지에서 사전정보공개목록을 제공하여 있었으며 41개 중앙행정기관 중 38개(92.68%) 기관이 사전정보공표 운영가이드에 따라 사전정보공개 대상정보를 발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정보공표 운영가이드에서는 홈페이지에 사전정보공개 대상을 게재하기 전 외부전문가와 정보공개심의회 등을 활용하여 평가 제도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홈페이지 게재 전 평가 제도를 거친다고 응답한 수는 27명(65.85%)으로 나타나 사전정보공표 운영가이드를 준수한다고 응답했던 수와 설문 응답 수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정보공개 업무담당자의 사전정보공표 운영가이드 숙지가 부족하고 그로 인한 사전정보공표 대상정보 발굴 프로세스의 이해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각 기관의 내부 운영 규정 및 지침을 통해 사전정보 공개의 시기, 범위, 주기, 방법 등을 정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는 <표 42>와 같다. 설문 결과 기관 내 운영 규정과 지침에 사전정보 공개의 시기와 범위, 주기, 방법 등을 정하고 있다고 응답한 수는 33명(80.49%), 정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수는 8명(19.51%)으로 나타났다. 내부 운영 규정 및 지침에 공개의 시기, 범위, 주기, 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기관 내 공개의 시기와 범위, 주기, 방법 등의 변경이 잦기 때문에 매번 규정 및 지침을 수정하기 번거롭고 절차가 복잡하여 내부 운영 규정에 따로 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42> 내부 운영 규정 및 지침의 범위

구분	빈도(퍼센트%)
내부 운영규정 및 지침에 시기, 범위 등을 포함하고 있다	33(80.49)
내부 운영규정 및 지침에 시기, 범위 등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8(19.51)
사례 수	41(100.00)

기관 내 각종 위원회 등의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 <표 43>과 같다. 설문 결과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수는 27명(65.85%), 공개하고 있다고 응답한 수는 13명(31.71%)으로 나타났다.

<표 43> 각종 위원회 등의 회의록 공개 여부

구분	빈도(퍼센트%)
공개하고 있지 않다	27(65.85)
공개하고 있다	13(31.71)
무응답	1(2.44)
사례 수	41(100.00)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27명(65.85%)을 대상으로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를 추가 설문을 통해 조사한 결과 의사결정 과정 중 자료,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초래, 개인정보 보호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원회가 끝난 뒤 위원회 성격을 파악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사전정보공개제도가 정보공개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 <표 44>와 같다. 설문 결과 23명(56.10%)이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13명(31.71%)이 그렇지 않다, 2명(4.88%)이 전혀 그렇지 않다, 1명(2.44%)이 매우 그렇다, 1명(2.44%)이 그렇지 않다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44> 사전정보공개제도가 정보공개제도에 미치는 영향

구분	빈도(퍼센트%)
매우 그렇다	1(2.44)
그렇다	23(56.10)
보통이다	13(31.71)
그렇지 않다	1(2.44)
전혀 그렇지 않다	2(4.88)
무응답	1(2.44)
사례 수	41(100.00)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라고 응답한 긍정적 인식의 응답자가 24명(58.54%)으로 나타났고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의 부정적 인식의 응답자는 3명(7.32%)으로 나타나 과반수의 정보공개 업무담당자는 사전정보

공개제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표 45>는 원문정보공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점을 우선 순위로 조사한 결과이다.

<표 45> 원문정보공개제도 운영의 문제점 우선순위

구분	빈도(퍼센트%)
처리과 내 기록생산자 대상 교육의 부족	16(39.02)
원문정보공개 서비스 처리 환경 기반의 부족	11(26.83)
개인정보 필터링 기능의 한계	9(21.95)
원문정보 시스템에 등록 전 평가 제도의 미비	4(9.76)
무응답	1(2.44)
사례 수	41(100.00)

*우선순위(1순위)

원문정보공개 업무 수행 시 어려운 점을 처리과 내 기록생산자 대상 교육의 부족을 1순위라고 응답한 수는 16명(39.02%), 원문정보공개 서비스 처리 환경 기반 부족을 1순위라고 응답한 수는 11명(26.83%), 개인정보 필터링 기능의 한계가 9명(21.95%), 원문정보 시스템에 등록 전 평가 제도의 미비가 4명(9.76%)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기관 내에서 원문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부족하고 원문정보공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 기반의 부족, 원문정보공개 기능시스템의 한계 등을 문제점으로 찾을 수 있었다. 이는 기관 내에서 원문정보공개제도의 운영을 위한 전반적인 인프라 구축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보인다.

원문정보공개제도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원문정보공개시스템의 기능개선이 필요한가를 조사한 결과는 <표 46>과 같다. 설문 결과 원문정보공개시스템의 기능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수는 21명(51.22%),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수가 17명(41.46%)으로 나타났다. 원문정보공개시스템의 기능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21명(51.22%)을 대상으로 추가 설문을 실시한 결과 개인정보 필터링 기능의 개선, 민감한 정보 필터링 기능의 개선, 검색 기능의 개선, 가치 판단 제도의 개발 등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6> 원문정보공개시스템의 기능개선의 필요성

구분	빈도(퍼센트%)
기능 개선이 필요하다	21(51.22)
기능 개선이 필요하지 않다	17(41.46)
무응답	3(7.32)
사례 수	41(100.00)

21명을 대상으로 한 추가 설문에서 개인정보 필터링 기능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수는 11명(52.38%), 민감한 정보 필터링 기능의 개선이 4명(19.05%)으로 나타나 원문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전반적인 정보 필터링 기능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업무담당자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원문정보공개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법률적 제도개선이 필요한지를 조사한 결과는 <표 47>과 같이 나타났다. 법률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수가 25명(60.98%), 필요하다고 응답한 수가 13명(31.71%)으로 조사되어 원문정보공개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법률적 제도개선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 원문정보공개제도의 법률적 제도개선의 필요성

구분	빈도(퍼센트%)
법률적 제도개선이 필요하지 않다	25(60.98)
법률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13(31.71)
무응답	3(7.32)
사례 수	41(100.00)

원문정보공개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법률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13명(31.7%)을 대상으로 추가 설문을 실시한 결과 구체적인 법률의 제도화, 정보공개법 제9조제5호와 관련된 사항은 결정 완료 후 일괄적 원문 공개, 공개되는 정보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제도의 개발 등을 통해 원문정보공개 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원문정보공개제도가 정보공개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를 조사한 결과

는 <표 48>과 같다.

<표 48> 원문공개제도가 정보공개제도에 미치는 영향

구분	빈도(퍼센트%)
매우 그렇다	—
그렇다	17(41.46)
보통이다	10(24.39)
그렇지 않다	11(26.83)
전혀 그렇지 않다	1(2.44)
무응답	2(4.88)
사례 수	41(100.00)

원문정보공개제도가 정보공개제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의 정도를 묻는 설문
에 그렇다고 응답한 수는 17명(41.46%),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수는 11명
(26.83%), 보통이라고 응답한 수는 10명(24.39%),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수
는 1명(2.44%)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원문정보공개제도를 긍정적으로 인식
하고 있는 응답자는 ‘그렇다’라고 응답한 17명(41.46%)으로 나타났고,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응답자는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12명
(29.27%)으로 나타나 사전정보공개제도에 비해 원문정보공개제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사전정보공개제도에 비해 원문정보공개제도가 늦게 시행 된 만큼 그 운영
효과를 가시적으로 느낄 시기가 짧았고, 일괄적인 정부의 원문공개율 확대 방안
등으로 원문정보공개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생긴 것으로 유추된다.

4.2.5 정보공개제도의 체계적인 기반마련에 관한 사항

다음 <표 49>는 소속 기관 내에 정보공개업무 전담부서 설치 여부와 담당인력
수의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설문 결과이다. 기관 내 정보공개업무 전담
부서가 따로 설치되어 있다고 응답한 수는 13명(31.71%),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한 수는 28명(68.29%)으로 나타나 과반수 이상의 기관에서 정보공개 업무

전담 부서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9> 정보공개업무 전담 부서 및 담당 인력

구분		빈도(퍼센트%)
전담부서	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28(68.29)
	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있다	13(31.71)
	사례 수	41(100.00)
담당인력	담당인력이 충분하지 않다	27(65.85)
	담당인력이 충분하다	13(31.71)
	무응답	1(2.44)
	사례 수	41(100.00)

또한 현재 기관에서 정보공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력이 충분한지를 묻는 조사 결과 27명(65.85%)이 그렇지 않다, 13명(31.71%)이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앞선 일반적 특성을 묻는 설문을 통해 기관 별 정보공개 업무 담당 인력이 ‘1명’이라고 응답한 수가 30명(73.17%)인 것으로 비교해보아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 업무 담당자가 1명으로 담당인력이 충분하다고 느끼는 응답자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설문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은 정보공개 전담부서를 갖추고 있지 않으며 정보공개 담당인력의 수도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보공개법 제6조 제2항(공공기관의 의무)이 매우 모호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제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강제성 있는 법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보공개업무를 위한 장소를 기관 내에 확보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장소를 확보하고 있다고 응답한 수가 17명(41.46%), 확보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수가 24명(58.54%)으로 나타났다. 기관 내에 정보공개업무를 위한 장소를 확보하고 있다고 응답한 17명(41.46%)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장소를 묻는 추가 설문을 실시한 결과 민원실과 운영지원과가 각 7명(41.18%)으로 가장 많았고 자료관실이 2명(11.76%), 기록물 열람실이 1명(5.88%)으로 나타났다(표 50 참고).

<표 50> 소속 기관 내 정보공개 업무 장소 확보

구분	빈도(퍼센트%)
장소를 확보하고 있지 않다	24(58.54)
장소를 확보하고 있다	17(41.46)
사례 수	41(100.00)

이는 정보공개 업무만을 위한 장소를 따로 확보한 것이 아니라 기관 내의 정보 공개 업무담당자의 사무실이나 이용자의 민원을 받는 곳 등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장소를 확보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24명(58.54%)을 대상으로 별도의 장소 확보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추가 설문을 실시한 결과 22명(91.67%)이 별도의 장소 확보는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여 과반수의 정보공개 업무담당자는 정보공개 업무만을 위한 별도의 장소 확보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공개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소속 기관의 처리과를 대상으로 1년 동안 실시하는 지도점검의 횟수와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횟수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 <표 51>과 같다.

<표 51> 소속 기관의 연간 지도점검 횟수와 연간 교육 횟수

구분		빈도(퍼센트%)
연간 지도점검 횟수	1번 실시	18(43.90)
	2번 실시	6(14.63)
	3번 실시	2(4.88)
	4번 이상 실시	9(21.95)
	실시하지 않는다	6(14.63)
	사례 수	41(100.00)
연간 교육 횟수	1번 실시	15(36.59)
	2번 실시	14(34.15)
	3번 실시	6(14.63)
	4번 이상 실시	6(14.63)
	실시하지 않는다	—
	사례 수	41(100.00)

소속 기관의 연간 지도점검 횟수를 묻는 설문에 1번 실시한다고 18명(43.90%)으로 가장 많았고, 4번 이상 실시가 9명(21.95%), 2번 실시가 6명(14.63%), 실시하지 않는다고 6명(14.63%), 3번 실시가 2명(4.88%)순으로 나타났다.

소속 기관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공개제도 교육의 연간 실시 횟수를 묻는 설문에 1번 실시한다고 응답한 수가 15명(36.59%), 2번 실시가 14명(34.15%), 3번 실시와 4번 이상 실시가 각 6명(14.63%)으로 나타났다.

두 설문을 통해 소속 기관 구성원들의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인식 고양을 위한 교육 횟수와 운영 개선을 위한 관리 감독의 횟수가 매우 적은 편으로 나타나 중앙행정기관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2.6 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인식 분석

1)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전반적 인식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이해도, 관심도, 필요성 인식, 업무 스트레스, 만족도 등의 항목을 평균 3.0 기준으로 측정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정보공개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의 전체평균은 3.49점으로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평균점수가 4점 이상으로 높게 나타난 문항은 2개 문항으로 정보공개업무에 대한 이해도에 대한 문항의 평균은 4.18점, 책임감을 묻는 문항의 평균은 4.1점이었다. 이 두 문항은 평균 4점 이상으로 정보공개 업무담당자가 대체적으로 정보공개제도를 잘 이해하고 있으며 정보공개 업무를 담당하는 것에 대해 책임감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점수가 3~4점 사이의 보통으로 나타난 문항은 10개 문항으로 나타났다. '정보공개제도에 대해 관심이 높은가'와 '정보공개 업무가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하는가' 문항의 평균이 각 3.87점, 3.9점으로 나타나 보통 문항들 중에서도 평균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보공개 업무담당자가 정보공개제도를 기관

의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제도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소속 기관의 정보공개제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문항의 평균은 3.56점, ‘정보공개제도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에 효과적인가’ 문항의 평균은 3.62점, ‘정보공개제도가 국민들의 행정 참여에 기여하는가’ 문항의 평균은 3.23점, ‘정보공개제도가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효과적인가’ 문항의 평균은 3.64점으로 나타나 정보공개 업무담당자들은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공개업무 관련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가’ 문항의 평균은 3.62점, ‘현재 담당하고 있는 일에 소명감을 느끼는가’를 묻는 문항의 평균은 3.18점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보공개업무를 담당하는 것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는가’와 ‘정보공개 업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가’ 문항의 평균은 각 3.64점, 3.69점으로 정보공개 업무담당자가 업무 수행으로 인해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정보공개 업무담당자는 대체적으로 정보공개제도를 잘 이해하고 있으며 정보공개제도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비교적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보공개 업무로 인한 업무 부담감과 스트레스의 평균 점수는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 정신적인 압박감을 많이 받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평균점수가 보통보다 낮은 3점 이하로 나타난 문항은 4개 문항으로 나타났다. ‘정보공개업무와 관련하여 소속 기관이 지원을 장려하는 분위기인가’ 문항의 평균은 2.95점, ‘정보공개 업무에 대해 만족하는가’ 문항의 평균은 2.87점, ‘정보공개 담당자로서의 자부심을 느끼는가’ 문항의 평균은 2.92점,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할 때 보람을 느끼는가’ 문항의 평균이 2.9점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대부분의 업무담당자는 스스로 정보공개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정보공개제도가 국민의 알 권리 신장과 국정 참여, 행정의 투명성 구현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정보공개업무를 담당하는 것에 대해 책임감과 소명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담 부서 설치 부족, 담당 인력의 부족 등 기관의 정보공개 업무에 대한 지원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업무담당자의 업무 스트레스와 부담감은 높은 반면 보람과 만족감 등의 전반적인 업무만족도는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기관 별 정보공개 업무담당자의 인력 보충과 정보공개 업무 지원 등의 전반적인 근무여건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표 52 참고).

<표 52>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대한 업무담당자의 인식

질문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평균	표준 편차
이해도	—	—	8 (19.5)	16 (39.0)	15 (36.6)	2 (4.9)	4.1795	.75644
관심도	2 (4.9)	2 (4.9)	6 (14.6)	18 (43.9)	11 (26.8)	2 (4.9)	3.8718	1.05580
중요도	—	5 (12.2)	6 (14.6)	16 (39.0)	12 (29.3)	2 (4.9)	3.8974	.99459
운영의 적절도	1 (2.4)	2 (4.9)	16 (39.0)	14 (34.1)	6 (14.6)	2 (4.9)	3.5641	.91176
알 권리 보장 기여도	1 (2.4)	5 (12.2)	10 (24.4)	15 (36.6)	8 (19.5)	2 (4.9)	3.6154	1.04164
행정 참여 기여도	2 (4.9)	10 (24.4)	10 (24.4)	11 (26.8)	6 (14.6)	2 (4.9)	3.2308	1.15762
행정 투명성 기여도	1 (2.4)	4 (9.8)	9 (22.0)	19 (46.3)	6 (14.6)	2 (4.9)	3.6410	.95936
부담감	3 (7.3)	3 (7.3)	7 (17.1)	18 (43.9)	8 (19.5)	2 (4.9)	3.6410	1.13525
업무스트레스	2 (4.9)	3 (7.3)	8 (19.5)	18 (43.9)	8 (19.5)	2 (4.9)	3.6923	1.05516
교육 이수	4 (9.8)	4 (9.8)	5 (12.2)	16 (39)	10 (24.4)	2 (4.9)	3.6154	1.26938
기관 내 지원도	4 (9.8)	10 (24.4)	12 (29.3)	8 (19.5)	4 (9.8)	3 (7.3)	2.9474	1.16125
책임감	1 (2.4)	1 (2.4)	4 (9.8)	20 (48.8)	13 (31.7)	2 (4.9)	4.1026	.88243
만족감	5 (12.2)	7 (17.1)	19 (46.3)	4 (9.8)	4 (9.8)	2 (4.9)	2.8718	1.10452
자부심	5 (12.2)	7 (17.1)	17 (41.5)	6 (14.6)	4 (9.8)	2 (4.9)	2.9231	1.13287
보람	5 (12.2)	10 (24.4)	12 (29.3)	8 (19.5)	4 (9.8)	2 (4.9)	2.8974	1.18754
소명감	4 (9.8)	5 (12.2)	14 (34.1)	12 (29.3)	4 (9.8)	2 (4.9)	3.1795	1.12090
계							3.49	

다음 <표 53>은 정보공개 업무 담당자가 정보공개 업무를 수행할 때 불만했던 사항을 조사한 결과이다.

<표 53> 정보공개 업무 수행 시 불만족 사항

구분	빈도(퍼센트%)
불필요한 정보공개청구로 인한 행정력 낭비	40(97.5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모호성	36(87.80)
정보공개업무로 인한 부담감	35(85.37)
정보공개제도 처리기한에 대한 불만족	34(82.93)
정보공개제도의 처리 방식이나 절차에 대한 불만족	34(82.93)
무응답	10(24.39)
사례 수	189(460.98)

*우선순위

정보공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불만족스러운 사항을 우선순위로 묻는 설문
을 통해 선정된 1순위는 불필요한 정보공개청구로 인한 행정력 낭비로 40명
(97.6%)이 이에 응답하여 악성 민원과 과다한 청구량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
력 낭비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조사되었다. 2순위는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의 모호성으로 36명(87.8%)이 응답하였고, 3순위는 정보공개업
무로 인한 부담감으로 35명(85.4%), 4순위는 처리기한에 대한 불만족과 처리 방
식과 절차에 대한 불만족으로 각 34명(82.9%)이 응답하였다.

정보공개제도의 발전을 위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항을 조사한 결과
는 다음 <표 54>와 같다.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있어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34명(82.9%)이 불필요한
정보공개청구의 제한이라고 응답하였고 20명(48.8%)이 정보공개제도 전담부서
신설, 13명(31.7%)이 공개처리방식이나 절차의 간소화, 13명(31.7%)이 비공개대
상 정보범위의 명확화라고 응답하였다. 기타 의견으로는 정보공개 청구서의 내용
판단 기구 설치를 통한 행정력 낭비 축소가 있었다. 이를 통해 정보공개 업무담
당자가 불필요한 정보공개청구로 인해 업무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전담부서

의 부재로 인한 불편함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 정보공개제도 개선되어야 할 사항

구분	빈도(퍼센트%)
불필요한 정보공개청구 제한	34(82.93)
정보공개제도 전담부서 신설	20(48.78)
공개처리방식이나 절차 간소화	13(31.71)
비공개대상 정보범위의 명확화	13(31.71)
정보공개법과 동법 시행령 범위 구체화	8(19.51)
정보공개업무 관련 교육의 증대	4(9.76)
정보공개제도의 홍보 확대	4(9.76)
공개 수수료 조정	3(7.32)
행정정보공표 목록의 확대	2(4.88)
기타	2(4.88)
무응답	10(24.39)
사례 수	113(275.63)

*복수응답

두 설문을 통해 악성 민원, 과도한 청구량 등의 불필요한 정보공개청구로 인해 정보공개 업무담당자들이 업무 수행 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비공개 대상 정보 범위의 모호함, 복잡한 공개처리방식과 절차 등을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유의도 검정

정보공개제도 운영 현황에 대한 인식의 정도, 제도 및 기능 개선에 대한 필요성 인식 등의 항목은 직렬, 근무경력에 따라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 카이제곱검증(χ^2 test)과 T검증(t-test)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데이터의 통계분석은 유의수준 $p < .05$ 에서 검증하였다.

카이제곱검증은 ‘근무경력에 따라 제도 및 기능 개선에 대한 필요성 인식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연구 가설 하에 검증을 실시하였다. T검증

(t-test) 또한 ‘직렬과 근무경력에 따라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에 유의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라는 연구 가설 하에 검증을 실시하였다.

① 이용자 의견 파악 제도

다음은 정보공개 업무를 담당하였던 근무 경력 차이에 따라 정보공개제도 및 기능 개선에 대한 필요성 인식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고자 7년 미만인 그룹과 7년 이상인 그룹으로 나누어 3개 문항을 대상으로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표 55 참고). 유의수준 $p < .05$ 에서 검증한 결과 ‘이용자 요구 및 의견을 파악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가?’라는 문항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55> 카이제곱 검증 결과

문항	구분	7년 미만		7년 이상		카이제곱	p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귀하는 이용자 요구 혹은 의견을 파악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	11	68.8%	3	27.3%	4.492	.034*
	그렇지 않다	5	31.3%	8	72.7%		
귀하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원문정보공개시스템의 기능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	13	56.5%	8	53.3%	.037	.847
	그렇지 않다	10	43.5%	7	46.7%		
귀하는 원문정보공개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법률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	8	36.4%	5	31.3%	.108	.743
	그렇지 않다	14	63.6%	11	68.8%		

* $p < .05$

7년 미만 응답자 중 의견 파악 제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11명(68.8%)인데 반해 7년 이상 응답자 중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3명(27.3%)밖에 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정보공개 업무 경력이 짧을수록 오랜 경력의 담당자보다 이용자 요구 파악 제도의 필요성을 더욱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경력이 다른 그룹 간의 유의한 차이 값에 대한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
에 참여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담당자 중 5명에게 추가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7
년 미만 경력의 업무담당자는 업무의 경험이 짧아 공정성의 확보를 위해 제도나
절차를 통해 보완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이용자 의견 파악 제도를
더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반면 7년 이상 경력의 업무담당자는
소속 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이해도와 파악의 정도가 높고 전문
가로서의 판단 기준이 확립되어 있어 공개 여부 판단이 명확한 편이라고 답하였
다. 경력이 오래될수록 정보공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용자의 청구 패턴과 성향
을 파악하는 경우가 많아 제도나 절차를 통한 보완의 필요성을 그만큼 적게 인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보공개 모니터단’ 등의 이용자 의견 파악 제
도를 구성하여 운영해 본 경험이 있으나 효과를 보지 못해 이러한 제도의 필요성
을 느끼지 못한다고 답하였다.

② 교육 이수 정도

기록연구직과 행정직 두 그룹의 정보공개의 업무 및 제도에 대한 인식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유의수준 $p<.05$ 에서 검증한 결과, 업무 환경과 관련된
문항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왔다. ‘정보공개업무와 관련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 문항에서 기록연구직의 경우 평균 4.18점, 행정직의 경우 평균 3.18
점으로 나타나 기록연구직이 행정직보다 정보공개와 관련된 교육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56 참고).

직렬에 따른 유의한 차이 값에 대한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에 참여한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 업무담당자 중 5명에게 추가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기록연구직의 경우 정보공개 업무를 기록 관리와 밀접한 업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관심도가 행정직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인이 정보공개 업무영역에 있어 전문가라고 인식하는 성향
이 강해 교육의 중요성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어 교육의 참여도가 행정직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6> 직렬에 따른 인식 비교

질문내용	기록연구직			행정직			t	p
	N	평균	표준 편차	N	평균	표준 편차		
이해도	22	4.273	0.703	11	4.273	0.786	0.000	1.000
관심도	22	4.045	1.133	11	3.727	0.905	0.809	0.424
중요도	22	4.182	0.907	11	3.545	1.036	1.813	0.079
운영의 적절도	22	3.636	0.902	11	3.545	0.934	0.270	0.789
알 권리 보장 기여도	22	3.864	1.037	11	3.455	0.934	1.102	0.279
행정 참여 기여도	22	3.455	1.224	11	2.909	1.044	1.264	0.216
행정 투명성 기여도	22	3.909	0.971	11	3.455	0.934	1.283	0.209
부담감	22	3.818	0.958	11	3.364	1.567	0.883	0.392
업무스트레스	22	3.909	0.921	11	3.455	1.368	1.134	0.266
교육 이수	22	4.182	0.907	11	3.182	1.401	2.482	0.019*
기관 내 지원도	21	3.048	1.161	11	2.818	1.401	0.495	0.624
책임감	22	4.227	0.922	11	3.909	0.944	0.927	0.361
만족감	22	2.864	1.082	11	3.000	1.414	-0.308	0.760
자부심	22	3.045	1.214	11	2.818	1.250	0.502	0.619
보람	22	2.955	1.290	11	3.000	1.265	-0.096	0.924
소명감	22	3.409	1.141	11	3.000	1.265	0.937	0.356

*p<.05

③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인식

다음 <표 57>은 근무경력에 따라 T검증(t-test)을 실시한 결과이다. 근무경력은 7년 미만과 7년 이상 두 그룹의 정보공개의 업무 및 제도에 대한 인식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유의수준 $p < .05$ 에서 검증한 결과, 행정 참여 기여도, 행정 투명성 기여도 두 개 부분의 필요성 인식에 관련된 문항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왔다.

<표 57> 근무경력에 따른 인식 비교

질문내용	7년 미만			7년 이상			t	p
	N	평균	표준 편차	N	평균	표준 편차		
이해도	23	4.087	0.848	16	4.313	0.602	-.914	.367
관심도	23	3.783	1.085	16	4.000	1.033	-.627	.534
중요도	23	3.826	1.072	16	4.000	0.894	-.532	.598
운영의 적절도	23	3.565	0.896	16	3.563	0.964	.009	.993
알 권리 보장 기여도	23	3.391	1.033	16	3.938	0.998	-1.647	.108
행정 참여 기여도	23	2.870	1.140	16	3.750	1.000	-2.491	.017*
행정 투명성 기여도	23	3.391	0.941	16	4.000	0.894	-2.027	.050*
부담감	23	3.696	1.185	16	3.563	1.094	.356	.724
업무스트레스	23	3.739	1.054	16	3.625	1.088	.328	.745
교육 이수	23	3.304	1.363	16	4.063	0.998	-2.005	.052
기관 내 지원도	23	2.696	1.105	15	3.333	1.175	-1.696	.099
책임감	23	3.957	1.022	16	4.313	0.602	-1.248	.220
만족감	23	2.783	1.166	16	3.000	1.033	-.599	.553
자부심	23	2.783	1.166	16	3.125	1.088	-.927	.360
보람	23	2.783	1.204	16	3.063	1.181	-.719	.476
소명감	23	2.957	1.147	16	3.500	1.033	-1.515	.138

* $p < .05$

‘정보공개제도가 국민들의 행정 참여에 기여한다고 생각하는가’ 문항의 평균은 7년 미만 그룹의 평균이 2.87점, 7년 이상의 그룹 평균이 3.75점으로 나타나 근무경력이 많을수록 정보공개제도를 통해 국민의 행정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보공개제도가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효과적인가’ 문항의 평균은 7년 미만 그룹의 평균이 3.39점, 7년 이상 그룹의 평균이 4점으로 근무 경력이 많을수록 정보공개제도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을 구현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담당자의 근무경력이 많을수록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필요성 인식부분에서 더 높은 평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V.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본 장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 현황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45개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5.1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제도 현황 및 설문 분석 결과

1)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제도 현황 분석

1998년 1월부터 시행된 정보공개제도는 초기에 정보공개청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이후 사전정보공개제도와 원문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현재의 정보공개제도의 형태로 발전하였다. 중앙행정기관의 운영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45개 중앙행정기관 중 대다수의 기관이 정보공개제도 운영을 위해 소속 기관의 내부 운영 지침 및 규정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재검토 기한이 지난 지침과 규정을 개선하지 않은 기관들도 있었다. 정보공개제도 운영 지침 및 규정 대신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에 관한 운영 지침만을 갖추고 있는 기관도 있었으며 실제로는 운영 지침 및 규정을 갖추고 있으나 홈페이지 상에는 게재하지 않는 기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 처리율은 연간 평균 16%의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처리율에 있어서는 감소 추세를 보였다. 33개 중앙행정기관 중 4년간 꾸준히 높은 정보공개 처리율을 보인 기관은 'KFS(경제)', 'KIP(경제)', 'MOJ(수사조사교정)' 3개 기관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높은 처리율을 보인 기관이 가장 낮은 처리율을 보인 기관의 약 2배 이상의 처리율을 보여 기관마다 처리율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셋째,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중앙행정기관은 매년 85%이상의 공개율을 보였으나 전부공개 비중은 줄고 부분공개 비중이 소폭 상승하였다. 3년간 꾸준히 높은 정보 공개율을 보인 기관은 ‘KMA(사회복지)’와 ‘MPV(사회복지)’ 2개 기관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 전부공개 비중에 비해 부분공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SPP(수사조사교정)’와 ‘MND(외교안보)’, ‘NTS(경제)’ 3개 기관은 매년 낮은 공개율을 보여 기관의 기능과 성격에 따라 공개율의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중앙행정기관의 사전정보공개제도는 『사전정보공표 운영가이드』를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제도적인 절차나 가이드라인이 구체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아 일괄적인 제도의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중앙행정기관 홈페이지마다 사전정보공개제도를 지칭하는 명칭이 통일되어 있지 않고, 44개 중앙행정기관의 평균 사전정보공개 건수인 544건 이하의 사전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기관이 39개 기관으로 나타나 사전정보공개제도 운영에 있어 불균형한 모습을 보였다.

다섯째, 중앙행정기관은 2014년부터 원문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였으나 평균 원문공개율이 약 36%로 낮은 편이며 기관 별 원문공개율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문공개율 하위권 기관에 외교안보 성격의 기관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기관의 기능과 성격이 원문공개율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 업무 담당자 설문 분석 결과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 업무담당자 설문 조사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41개 기관의 담당자들의 설문을 회수하였다. 정보공개 업무담당자의 성별은 여성, 연령은 30대와 40대, 근무경력은 7년 이상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첫째,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정책’과 관련한 항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설문에 응한 모든 중앙행정기관이 정보공개제도를 위한 내부 운영 지침 및 규정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황 조사를 통해 홈페이지에 내부 지침을 게재하고 있지 않다고

조사되었던 기관 중 1개 기관은 설문 조사를 통해 운영 지침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기관이 홈페이지에 정보목록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보목록 제공을 통한 업무량 축소 효과는 미비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업무담당자는 정보공개 업무를 담당하기에 적절한 직렬이 ‘행정직’과 ‘기록연구직과 행정직의 분담’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록연구직의 고유 업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경우는 적은 편으로 나타났다. 정보공개심의회의 경우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위원 중 외부 위원의 수가 내부 위원의 수보다 적고, 서면 심의의 비율이 대면심의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보공개제도의 ‘비공개 최소화’에 관련한 항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정보공개 업무담당자들은 정보공개 여부 및 범위를 ‘각 부서 의견’과 ‘정보공개 업무담당자와 부서와의 의견 조율’을 통해 결정하고 있으며 그것이 옳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공개 범위 결정 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는 ‘정보공개법 및 운영 지침’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기관이 10일 이내에 비공개 결정처리를 내리지 못하는 비율은 10% 이하로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비공개 결정처리 기한 미준수 이유를 묻는 설문 결과 ‘정보공개 판단의 어려움’, ‘과다한 청구량’, ‘과다한 업무량’ 등이 주된 원인으로 나타났다. 비공개의 최소화를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도 매우 적은 수로 나타나 중앙행정기관의 부적정한 정보 비공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운영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공개 모니터단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기관이 과반수 이상으로 나타났으나 정보공개제도 이용자의 의견을 파악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고 있는 기관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보공개제도의 ‘적극적 공개’와 관련한 항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업무담당자는 『사전정보공표 운영가이드』를 기준으로 사전정보공개 대상을 발굴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실제 대상정보 발굴 프로세스를 묻는 설문을 통해 나타난 결과는 발굴 프로세스를 준수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원문정보공개제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애로사항을 설문한 결과 ‘처리과내 기록생산자 대상 교육의 부족’과 ‘원문정보공개 서비스 처리 환경 기반의 부족’을 가장 어려운 점으로 꼽았다. 원문정보공개시스템의 개인정보 필터링

기능과 민감한 정보의 필터링 기능 개선이 시급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정보공개제도의 ‘체계적인 기반마련’과 관련한 항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을 위한 전담 부서와 전담 인력의 배치, 장소 확보 여부에 대한 설문 결과 전담 부서 설치와 전담 인력의 배치가 부족하며 정보공개 업무를 위한 장소의 확보 역시 부족한 실정으로 나타났다. 소속 기관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간 교육 횟수와 처리과를 대상으로 하는 연간 지도점검 횟수도 매우 적은 편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인식’과 관련한 항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보공개 업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식 조사의 전체평균은 3.49점으로 대체로 긍정적인 편으로 나타났으며 정보공개 업무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도, 책임감의 평균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관 내 지원도, 만족감과 보람, 자부심의 평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보공개 업무 수행 시 ‘불필요한 정보공개청구로 인한 행정력 낭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모호성’, ‘정보공개업무로 인한 부담감’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정보공개제도 및 기능 개선에 대한 필요성 인식, 인식 관련 항목에 대한 유의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7년 이상과 7년 미만의 그룹으로 나누어 유의도 분석을 한 결과 근무 경력이 오래될수록 정보공개제도가 국민의 행정 참여와 행정의 투명성 확보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무 경력이 오래될수록 소속 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이용자의 청구 패턴을 파악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용자의 요구를 파악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2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제도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제도 운영 현황과 정보공개 업무담당자의 설문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중앙행정기관은 정보공개법에 의거하여 내부적으로 정보공개법 운영을 위한 지침과 규정, 훈령을 갖추고 있으나 그 내용은 대동소이하게 나타났다. 홈페이지에 운영 지침을 게재하고 있지 않은 기관도 있었고 재검토 기한이 지났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기관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서 각 기관들은 재검토 기한을 철저히 준수하여 지침과 규정을 신속하게 업데이트해 홈페이지에 제공하여야 한다.

둘째,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 청구건수는 연간 평균 16%의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처리율에 있어서는 감소 추세를 보였고,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에 전담 부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정보공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력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에 정보공개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업무량에 따른 2-3명의 탄력적인 인원을 배치하여 업무 증가에 따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 업무담당자들은 사전정보공개제도 운영 절차와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정보공개운영매뉴얼』과 『사전정보공표 운영가이드』를 참고하여 사전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관마다 사전정보공개를 지칭하는 용어가 다르고 발굴과정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기관들도 있어 중앙행정기관의 사전정보공개제도에 대한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성 있고 표준화된 사전정보공개제도 운영 지침을 만들어 용어의 통일과 업무 절차, 사전정보 발굴과정 절차를 분명히 하여 모든 기관에서 지킬 수 있도록 규제하여야 한다.

넷째,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이 평균 사전정보공개 건수인 544건 이하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관 간 사전정보공개 건수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각 중앙행정기관은 기능과 성격에 맞는 사전정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공개하고 사전정보공개목록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제시해야 한다. 또

한 홈페이지에 키워드 검색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정확한 내용과 업무 명을 알지 못해도 접근하기 쉽도록 하는 인터페이스를 구축하여 접근성 높은 사전정보공개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다섯째,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의 업무담당자들은 원문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 민감 정보, 개인 정보 필터링 기능의 한계와 기록생산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횟수의 부족을 어려움으로 꼽았다.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원활한 원문정보공개제도 운영을 위해 민감 정보와 개인 정보 필터링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상의 미비점들을 정기적으로 보완하고, 처리과 내 기록생산자와 정보공개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원문정보공개제도 교육 횟수를 확대해야 한다.

여섯째,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는 대면심의보다 서면심의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위원 구성에서는 내부 위원의 수가 외부 위원의 수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규정을 강화하여 무분별한 서면심의 개최를 줄이고 대면심의의 횟수를 확대하여야 한다. 또한 전문성을 갖춘 외부 위원의 구성 비율을 늘려 공정성 있고 객관적인 정보공개심의회를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일곱째,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은 이용자의 의견을 파악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고 있지 않아 이용자와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기관 별로 홈페이지를 통한 이용자 의견 수렴 게시판을 신설하고 설문 조사, 모니터링 제도 등을 실시하여 이용자와의 소통을 통한 만족도 높은 정보공개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덟째,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 업무담당자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이해도, 관심도, 책임감의 평균은 높고 만족감, 보람, 자부심의 평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담당자들은 과도한 청구량과 똑같은 내용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청구하는 불필요한 정보공개청구로 인해 불만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무분별한 정보공개청구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고 업무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만족도를 높이고 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V. 결 론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내세운 정부 3.0의 도입으로 국민들의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건수도 증가하였다. 중앙행정기관은 정보공개청구제도와 사전정보공개제도, 원문정보공개제도를 통해 적극적이고 사전적인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앙행정기관의 효과적인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 연구로 4년 간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정보공개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이 정보공개제도 운영을 위한 내부 운영 지침 및 규정을 갖추고 있었으나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있지 않은 기관도 있었으며 재검토 기한이 지났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기관들도 있었다.

둘째,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4년간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정보공개 청구건수는 연간 평균 16%의 증가 추세를 보였지만 처리율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정보공개율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매년 85% 이상이었으나 공개율 비중에 있어서 전부공개 비중은 축소하고 부분공개 비중이 증가하였다.

셋째, 44개 중앙행정기관의 평균 사전정보공개 건수는 544건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39개 기관이 평균 이하의 사전정보공개 건수를 제공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정보공개운영매뉴얼』과 『사전정보공표 운영가이드』를 통해 사전정보공개제도 운영 절차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사전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관마다 사전정보공개를 지칭하는 용어가 다르고 발굴과정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기관들도 있어 중앙행정기관의 사전정보공개제도에 대한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넷째, 45개 중앙행정기관의 평균 원문공개율을 36%로 나타냈으며 기관 간 원문공개율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중앙행정기관의 업무담당자들은

원문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 민감 정보와 개인 정보 필터링 기능의 한계, 기록생산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부족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다섯째,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 업무담당자들의 인식 조사 결과 종합 평균은 3.49점으로 평균 3.0을 기준으로 봤을 때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항목 중에서 이해도와 책임감은 평균 4점 이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만족감과 보람, 자부심은 평균 3점 이하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각 기관들은 재검토 기한을 철저히 준수하여 지침과 규정을 신속하게 업데이트하고 홈페이지에 제공하여야 한다.

둘째, 원활한 정보공개제도 운영을 위해 정보공개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업무량에 따른 2-3명의 탄력적인 인원을 배치하여 업무 증가에 따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통일성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사전정보공개제도 운영을 위해 표준화된 사전정보공개제도 운영 지침을 만들어 용어의 통일과 업무 절차, 사전정보 발굴과정 절차를 분명히 하여 모든 기관에서 지킬 수 있도록 규제하여야 한다.

넷째, 각 중앙행정기관은 기능과 성격에 맞는 사전정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공개하고 사전정보공개목록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제시해야 한다.

다섯째, 중앙행정기관의 원활한 원문정보공개제도 운영을 위해 민감 정보와 개인 정보 필터링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상의 미비점들을 정기적으로 보완하고, 처리과 내 기록생산자와 정보공개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원문정보공개제도 교육 횟수를 확대해야 한다.

여섯째,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규정을 강화하여 무분별한 서면심의 개최를 줄여 대면심의의 횟수를 확대하고, 전문성을 갖춘 외부 위원의 구성 비율을 늘려 공정성 있고 객관적인 정보공개심의회를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일곱째, 이용자의 의견을 파악하여 만족도 높은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기관 별로 홈페이지를 통한 이용자 의견 수렴 게시판을 신설하고 설문조사, 모니터링 제도 등을 실시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덟째, 무분별한 정보공개청구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고 업무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만족도를 높이고 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의 홈페이지와 정보공개포털, 정보공개연차보고서, 법령 등을 분석하고 정보공개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이다. 따라서 정보공개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공공기관 중 중앙행정기관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향후 정보공개제도를 실시하는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 김유승. (2010). 「거버먼트 2.0 기반의 정보공개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기록학연구』, 25:197-231.
- 김유승. (2014). 「알 권리 시대정부3.0의 위험과 과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4(4):37-62.
- 김은정. (2008). 「행정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의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분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김이숙. (2008). 「공공기록물 공개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김인선. (2011). 「공공기관에서의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대학원..
- 김혜원. (2014). 「사전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서비스에 대한 개선 방안 연구: 중앙행정기관 담당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성대학교 대학원.
- 나중희, 최영진, 정승호, 오강탁, 강동석. (2008). 「웹2.0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 제공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IT서비스학회지』, 7(1): 237-254.
- 박돌봉. (2005). 「지방자치단체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서울 특별시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 박선희. (201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대학원.
- 방민석. (2013). 「정부3.0'에 대한 개념적 탐색과 법정책적 과제」.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16(3): 137-160.
- 백진선. (2012).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기관의 정보관리수준 및 반응성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서향희. (2014).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제도 운영 현황과 개선방안」. 석사학위논문. 목포대학교 대학원.
- 송아리. (2014).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송희준, 김은정, 권효진, 유효정. (2012). 「한국과 일본의 정보공개제도와 운영실적의 비교 연구: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6(1):289-312.
- 안병철. (2009). 「정부관료제의 정보공개 행태분석: 43개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2002~2007)」.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6(3):133-160.
- 우윤석. (2013). 정부3.0의 이론적 배경과 해외사례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총』, 16:21-47.
- 우정수, 임태균. (2010). 「기초자치단체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연구-수요자 및 공급자 만족도를 중심으로」. 『인제논총』, 25(1):33-78.
- 유원중. (2013). 「울산광역시 정보공개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울산대학교 대학원.
- 이명진, 문명재. (200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행태에 관한 연구-중앙부처의 조직적 요인과 기능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지』, 166-185.
- 이명진, 문명재. (2010). 「공공기관의 조직적 특성과 정보공개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44(1):121-146.
- 이명희. (2004). 「중앙행정부처 웹사이트의 정보서비스평가정보공개와 이용자 참여를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 15(2):195-218.
- 이재완. (2014). 「정부운영패러다임과 정보공개패러다임의 상응성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17(2):147-234.
- 이춘형. (2010).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특별시 및 산하자치구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이혜정. (2007). 『미래 유비쿼터스 정부의 진화 Government 3.0』, 한국정보사

회진홍원.

이황진. (2008). 「유비쿼터스 정보기술을 활용한 전자정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배제대학교 대학원.

임진희, 이준기. (2010). 「정보공개에 대응한 공무원의 업무정보 제공행동연구」. 『한국기록학연구』, 23:179-225.

전진한. (2008). 「참여정부 정보공개정책에 관한 연구: 기록관리학적 측면에서」.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대학원.

정민영. (2015). 「원문공개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분석 및 방향성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부대학교 대학원.

최서우. (2009). 「행정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연구: 중앙부처와 위원회의 행정정보 공개 운영 상황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최영출. (2013). 「맞춤형 행정서비스 정책의 등장배경과 의미」. 『자치발전』, 2013년 5월호, 22-28.

최정민, 김유승. (2013). 「국내 정보공개 연구동향 분석」.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3(3):173-197.

최정민, 우지숙. (2011). 「정보공개심의회운영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지』.

최정민. (2011). 「공공기관의 행정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대응성 사례연구: 결과적, 실질적 측면의 대응성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지』.

최정민. (2014). 「중앙기관과 지방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과 정보공개 비교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4(3):83-103.

최정민. (2015).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대응성 분석」. 『기록학연구』, 45:155-188.

허경선. (2010). 「공공기관 정보공개활용과 효과분석: 알리오 시스템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지』, 697-730.

허준석. (2015). 「정부3.0 원문정보공개서비스 환경에서 전자기록물관리 고려사

항 분석」. 석사학위논문. 중부대학교 대학원.

행정안전부. (2011). 『정보공개운영매뉴얼』. 서울: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2012). 『2011정보공개 연차보고서』. 서울: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2013). 『2012정보공개 연차보고서』. 서울: 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 (2014). 『2013정보공개 연차보고서』. 서울: 안전행정부.

행정자치부. (2015). 『2014정보공개 연차보고서』. 서울: 행정자치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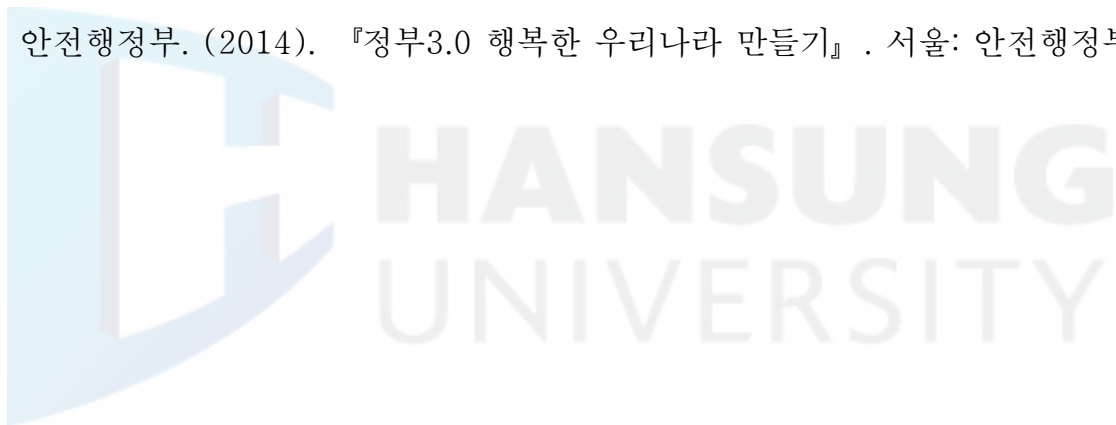
안전행정부. (2013). 『정부 3.0 구현을 위한 정보공개제도 업무처리 가이드』. 서울: 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 (2013). 『정부 3.0 백서』. 서울: 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 (2014). 『사전정보공표 운영 가이드』. 서울: 안전행정부.

행정자치부. (2015). 『정보공개 업무편람』. 서울: 행정자치부.

안전행정부. (2014). 『정부3.0 행복한 우리나라 만들기』. 서울: 안전행정부.



2. 국외문헌

Tina, Z. (2014). Freedom of Information Act (FOIA). Encyclopedia of U.S. Intelligence.

Birkinshaw, P. (2010). Freedom of information and its impact in the United Kingdom. *Government Information Quarterly*, 27: 312–321.

Hazell, R & Worthy, B. (2010). Assessing the performance of freedom of information. *Government Information Quarterly*, 27: 352–359.

Shepherd, E & Ennion, E. (2007). How has the implementation of the UK Freedom of Information Act 2000 affected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services?, *Records Management Journal*, 17(1): 32–51.

Halstuk, E. & Chamberlin, F. (2006).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1966–2006: A Retrospective on the Rise of Privacy Protection Over the Public Interest in Knowing What the Government's Up To. *Communication Law and Policy*, 11(4): 511–564.

3. 관련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013.3.2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3.23.)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2012.5.31.)

「행정정보 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 (2003.6.24.)

4. 웹사이트

대한민국정보공개 <www.open.go.kr>

정부3.0 <www.open.go.kr>

【부록 1】 중앙행정기관 정보공개제도 업무담당자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성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에서 기록관리학을 전공하는 전슬비입니다.

본 설문은 저의 석사학위 논문인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 현황 및 개선 방안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이에 45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업무 담당자의 의견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이 조사의 내용은 연구 목적 이외 다른 용도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음을 말씀드리며, 바쁘신 와중에도 설문에 답해주신 담당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5년 9월

한성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기록관리학 전공
지도교수 : 강 순 애
연구자 : 전 슬 비

PART 1. 기본사항

1. 연령

① 20~29세 ② 30~39세 ③ 40~49세 ④ 50세 이상

2.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3. 귀하의 정보공개 관련 근무경력을 적어주십시오.

() 년 () 개월

4. 귀하의 직렬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기록연구직 ② 행정직 ③ 전산직 ④ 기타

5. 귀하는 기록관리업무와 정보공개업무를 겸하고 계십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6. 현재 귀하의 기관에서 원문공개, 사전정보공개를 포함한 정보공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원을 적어주십시오. ()명

PART 2. 현황조사

1. 다음은 『정보공개제도 운영 및 정책』 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1. 귀 기관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을 위한 내부 지침 및 규정을 갖추고 있습니까?

- ① 그렇다
- ② 그렇지 않다(1-1로 이동)

1-1.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2. 귀하의 전체 업무 중에서 정보공개 업무의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10% 이하
- ② 11% ~ 30%
- ③ 31% ~ 50%
- ④ 51% ~ 70%
- ⑤ 70% 이상

3. 귀하는 정보공개제도를 누가 담당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기록연구직
- ② 행정직(정보공개 담당자)
- ③ 기록연구직과 행정직의 분담
- ④ 기타 ()

4. 귀 기관에서는 홈페이지에 정보목록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 ① 그렇다
- ② 그렇지 않다

5. 홈페이지에 정보목록을 제공하는 것이 정보공개업무량 축소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6. 귀 기관에서 1년 동안 실시하는 정보공개심의회 평균적인 운영횟수는 몇 회입니까?

- ① 1번
- ② 2번
- ③ 3번
- ④ 4번 이상
- ⑤ 하지 않는다

7.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이의신청
- ② 결정곤란
- ③ 기타 ()

8. 귀 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내부위원(위원장 포함)의 수 : 명

외부위원의 수 : 명

9. 귀 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유형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서면심의 : %

대면심의 : %

2. 다음은 『정보공개·비공개 결정(비공개의 최소화)』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1. 귀 기관에서는 정보공개 여부 및 범위를 누가 결정합니까?

- ①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선정
- ② 정보공개제도 업무담당자
- ③ 정보공개제도 담당자와 부서와의 의견 조율
- ④ 기타 ()

2. 귀하는 정보공개 여부 및 범위를 누가 결정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각 부서의 생산자
- ② 정보공개제도 업무담당자
- ③ 정보공개제도 업무담당자와 부서와의 의견 조율
- ④ 기타 ()

3. 정보공개 범위를 정하는 기준의 우선순위를 적어주세요.

- ① 정보공개법 및 운영 지침 ()
- ② 각 부서의 의견 ()
- ③ 정보공개제도 업무 담당자의 의견 ()

4. 귀 기관에서 10일 이내에 비(부분)공개 결정처리를 내리지 못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10% 이하
- ② 11~20%
- ③ 21~30%
- ④ 31~40%
- ⑤ 그 이상

4-1. 비(부분)공개 결정처리 기한을 준수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5. 귀 기관은 비(부분)공개를 결정하였을 때, 매년 청구인에게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까?

- ① 그렇다
- ② 그렇지 않다(5-1로 이동)

5-1.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6. 귀 기관에서는 부적정한 비공개 최소화를 위해 운영 중인 제도가 있습니까?

- ① 그렇다(6-1로 이동)
- ② 그렇지 않다

6-1. 그렇다면, 사례를 적어주세요.

()

7. 귀 기관에서는 ‘정보공개 모니터단’을 실시해 본 적이 있습니까?

- ① 그렇다
- ② 그렇지 않다

8. 귀하는 ‘정보공개 모니터단’이 정보공개업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 ② 그렇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지 않다
- ⑤ 전혀 그렇지 않다

9. ‘정보공개 모니터단’ 이외에 이용자의 요구 혹은 의견을 파악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까?

- ① 그렇다 (9-1로 이동)
- ② 그렇지 않다 (9-2로 이동)

9-1. 그렇다면, 사례를 적어주세요.

()

9-2. 이용자 요구 혹은 의견을 파악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그렇다
- ② 그렇지 않다

3. 다음은 『정보공개제도의 사전적·적극적 공개』와 관련된 문항입니다.

1. 귀 기관은 홈페이지에 사전정보공개 목록을 게재하고 있습니까?

- ① 그렇다
- ② 그렇지 않다(1-1로 이동)

1-1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2. 귀 기관에서는 사전정보공표 운영 가이드에 따라 사전정보공표 대상정보를 발굴하고 있습니까?

-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2-1로 이동)

2-1 그렇지 않다면, 귀 기관에서 사용하는 사전정보공표 대상정보의 발굴 기준은 무엇입니까?

()

3. 귀 기관에서는 사전정보공표 대상정보를 발굴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기 전 평가 제도를 거치고 있습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4. 귀 기관에서는 내부 운영규정 및 지침을 통해 행정정보 공표의 시기, 범위, 주기, 방법 등을 정하고 있습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4-1로 이동)

4-1. 내부 운영규정 및 지침에 정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5. 귀 기관에서는 각종 위원회 등의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습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5-1로 이동)

5-1.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6. 귀하는 사전정보공개제도가 정보공개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 ② 그렇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지 않다
- ⑤ 전혀 그렇지 않다

7. 귀하가 원문정보공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려운 점을 우선순위로 매겨주십시오. 1위: 2위: 3위: 4위: _____

- ① 원문정보공개 서비스 처리 환경 기반의 부족
- ② 처리과 내 기록생산자 대상 교육의 부족
- ③ 개인정보 필터링 기능의 한계
- ④ 원문정보 시스템에 등록 전 평가 제도의 미비

8. 귀하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원문정보공개시스템의 기능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그렇다(8-1로 이동)
- ② 그렇지 않다

8-1. 그렇다면,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적어주세요.

(_____)

9. 귀하는 원문정보공개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법률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그렇다(9-1로 이동)
- ② 그렇지 않다

9-1. 그렇다면,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적어주세요.

(_____)

10. 귀하는 원문공개제도가 정보공개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 ② 그렇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지 않다
- ⑤ 전혀 그렇지 않다

다음은 『정보공개제도의 체계적인 기반마련』 와 관련된 문항입니다.

1. 귀 기관에는 정보공개업무를 전담하는 부서가 따로 설치되어 있습니까?

- ① 그렇다
- ② 그렇지 않다

2. 귀 기관에서 현재 정보공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그렇다
- ② 그렇지 않다

3. 귀 기관에서는 정보공개업무를 위한 장소를 확보하고 계십니까?

- ① 그렇다 (3-1로 이동)
- ② 그렇지 않다 (3-2로 이동)

3-1. 장소를 확보하고 있다면 어느 곳에서 하고 있는지를 적어주세요.

()

3-2. 정보공개업무를 위한 별도의 장소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그렇다
- ② 그렇지 않다

4. 귀 기관에서는 처리과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계십니까?

- ① 1번
- ② 2번
- ③ 3번
- ④ 그 이상
- ⑤ 하지 않는다

5. 귀 기관에서는 정보공개제도 교육을 1년에 몇 번 실시하십니까?

- ① 1번
- ② 2번
- ③ 3번
- ④ 그 이상
- ⑤ 하지 않는다



PART 3. 인식조사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항목	번호	질문 내용					
이해도 관심도	1	귀하는 정보공개업무에 대해 잘 알고 계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2	귀하는 정보공개제도에 대해 관심이 높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중요성 적절성	3	귀하는 정보공개 업무가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4	귀하는 귀 기관의 정보공개제도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필요성 인식	5	귀하는 정보공개제도가 국민의 알권리 보장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6	귀하는 정보공개제도가 국민들의 행정 참여에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7	귀하는 정보공개제도가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업무 스트레스	8	귀하는 정보공개업무를 담당하는 것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9	귀하는 정보공개업무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업무 환경	10	귀하는 정보공개업무와 관련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11	귀 기관은 정보공개업무와 관련하여 지원을 장려하는 분위기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책임감 만족도	12	귀하는 정보공개 업무에 대해 책임감을 느낍니까?	①	②	③	④	⑤
	13	귀하는 현재 하고 있는 정보공개업무에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14	귀하는 정보공개 담당자로서의 자부심을 느끼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15	귀하는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할 때 보람을 느끼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16	귀하는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소명감을 느끼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17. 정보공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불만족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그
이유들의 순위를 매겨 주십시오. 1위: 2위: 3위: 4위: 5위:

- ① 정보공개제도 처리기한에 대한 불만족
- ② 정보공개제도의 처리 방식이나 절차에 대한 불만족
- ③ 불필요한 정보공개청구로 인한 행정력 낭비
- ④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모호성
- ⑤ 정보공개업무로 인한 부담감

18. 정보공개제도가 발전하기 위해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항을 선택해 주십시오. (복수응답가능)

- ① 정보공개법과 동법 시행령 범위 구체화
- ② 비공개대상 정보범위의 명확화
- ③ 행정정보공표 목록의 확대
- ④ 정보공개업무 관련 교육의 증대
- ⑤ 정보공개제도 전담부서 신설
- ⑥ 정보공개제도의 홍보 확대
- ⑦ 공개 수수료 조정
- ⑧ 불필요한 정보공개청구 제한
- ⑨ 공개처리방식이나 절차 간소화
- ⑩ 기타 ()

【부록 2】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제도 내부 지침 및 규정 명칭

번호	기관 명	기관 별 지침 및 규정	시행일
1	외교부	정보공개운영지침	2009.08.24
2	국방부	정보공개운영훈령	2010.11.09
3	문화체육관광부	정보공개운영규정	2009.12.15
4	환경부	행정정보공개에관한규정	2007.12.03
5	고용노동부	정보공개에관한규정	2007.12.24
6	여성가족부	정보공개지침	2008.04.11
7	국토교통부	정보공개규정	1997.12.31
8	해양수산부	정보공개운영규정	2013.06.28
9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정보공개지침	2013.05.01
10	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	2006.04.27
11	행정자치부	정보공개운영규정	2008.03.31
12	농림축산식품부	정보공개운영지침	2008.05.20
13	보건복지부	정보공개운영규정	2009.08.24
14	교육부	정보공개운영규정	2008.05.25
15	국무조정실	행정정보공개지침	2003.08.11
16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정보공개지침	2008.09.09
17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정보공개지침	2003.11.08
18	금융위원회	행정정보공개지침	2009.08.21
19	국민권익위원회	정보공개운영규정	2008.05.08
20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공개운영규정	2011.11.07
21	국세청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2004.11.15
22	관세청	정보공개운영에관한훈령	2003.09.22
23	병무청	행정정보공개에관한규정	2008.04.16
24	대검찰청	행정정보공개세부시행지침	2003.12.13
25	문화재청	정보공개운영규정	2005.11.18
26	특허청	정보공개운영규정	2008.03.20
27	기상청	행정정보공개규정	2006.05.09

28	조달청	정보공개제도운영규정	2003.09.01
29	통계청	행정정보공개지침	2003.08.01
30	농촌진흥청	정보공개운영규정	2003.09.02
31	산림청	정보공개운영지침	2005.05.11
32	중소기업청	행정정보공개지침	2003.11.25
33	방위사업청	행정정보공개규정	2006.04.10
34	새만금개발청	정보공개규정	2013.09.12
3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보공개규정	2006.02.03
36	법제처	정보공개에관한규정	2007.01.31
37	국민안전처	정보공개운영규정	2004.07.27
38	국가보훈처	정보공개운영지침	2004.02.21
39	인사혁신처	정보공개운영규정	2014.12.04
40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공개운영규정	2004.10.07
41	산업통상자원부	지식경제부 행정정보공개지침	2003.10.22
42	기획재정부	정보공개운영규정	2008.06.16
43	통일부	행정정보공개확대를위한지침	2009.09.16
44	감사원	—	—
45	경찰청	—	—

**【부록 3】 43개 중앙행정기관의 운영 지침 내 교육 횟수 지정
현황**

순서	기관명	교육 횟수	순서	기관명	교육 횟수
1	방송통신위원회	연 1회	23	보건복지부	연 1회
2	공정거래위원회	연 1회	24	환경부	언급 -
3	금융위원회	연 1회	25	고용노동부	연 1회
4	국민권익위원회	연 1회	26	여성가족부	연 1회
5	원자력안전위원회	연 1회	27	국토교통부	언급 -
6	국무조정실	언급 -	28	해양수산부	언급 -
7	법제처	언급 -	29	국세청	연 1회
8	국민안전처	연 1회	30	관세청	연 1회
9	국가보훈처	연 1회	31	조달청	연 1회
10	인사혁신처	연 1회	32	통계청	연 1회
11	식품의약품안전처	연 1회	33	병무청	연 1회
12	기획재정부	연 1회	34	대검찰청	연 1회
13	미래창조과학부	연 1회	35	방위사업청	연 2회
14	교육부	연 1회	36	문화재청	언급 -
15	외교부	연 1회	37	농촌진흥청	연 2회
16	통일부	언급 -	38	산림청	연 1회
17	법무부	연 1회	39	중소기업청	연 1회
18	국방부	연 1회	40	특허청	연 1회
19	행정자치부	연 1회	41	기상청	연 1회
20	문화체육관광부	연 1회	42	새만금개발청	연 1회
21	농림축산식품부	언급 -	43	행복청	연 1회
22	산업통상자원부	언급 -			

【부록 4】 중앙행정기관의 최근 변동년도

구분	기관명	담당부서명	최근변동년도
부(17)	고용노동부	서무계	2010
	교육부	운영지원과	2013
	국방부	창조행정담당관	1948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	2013
	기획재정부	운영지원과	2008
	농림축산식품부	운영지원과	2013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	2008
	미래창조과학부	운영지원과	2013
	법무부	운영지원과	1991
	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	2010
	산업통상자원부	운영지원과	2013
	여성가족부	운영지원과	2010
	외교부	외교사료팀	2013
	통일부	창조행정담당관실	1998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	2013
	행정자치부	운영지원과	2014
	환경부	운영지원과	1994
처(5)	국가보훈처	운영지원과	1985
	국민안전처	운영지원과	2014
	법제처	운영지원과	1948
	식품의약품안전처	운영지원과	2009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	2014
청(16)	경찰청	경무과	1974
	관세청	운영지원과	2008
	국세청	법무과	1966
	기상청	운영지원과	2008
	농촌진흥청	운영지원과	1962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1948
	문화재청	정보화담당관	1999
	방위사업청	기획조정관	2006
	병무청	운영지원과	1970

	산림청	운영지원과	1967
	새만금개발청	운영지원과	2013
	조달청	운영지원과	1961
	중소기업청	운영지원과	1996
	통계청	운영지원과	2005
	특허청	정보관리과	197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운영지원과	2006
위원회(5)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지원과	2008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	1981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	2008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지원과	2008
	원자력안전위원회	운영지원과	2011
원(1)	감사원	행정지원실	1963
실(1)	국무조정실	총무과	2013



【부록 5】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 처리율 현황(2011~2014)

5-1) 2011년 정보공개 처리율 현황

순서	기관 명	처리건수	청구건수	처리율
1	대검찰청	1412건	4,696건	30.07%
2	법제처	134건	408건	32.84%
3	감사원	220건	500건	44.00%
4	방송통신위원회	283건	627건	45.14%
5	병무청	142건	306건	46.41%
6	국민권익위원회	425건	900건	47.22%
7	관세청	189건	377건	50.13%
8	금융위원회	137건	256건	53.57%
9	환경부	579건	1,061건	54.57%
10	통계청	174건	315건	55.24%
11	기획재정부	246건	429건	57.34%
12	방위사업청	78건	134건	58.21%
1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36건	57건	63.16%
14	여성가족부	242건	380건	63.68%
15	문화체육관광부	619건	964건	64.21%
16	보건복지부	807건	1,254건	64.35%
17	농촌진흥청	126건	195건	64.62%
18	조달청	147건	226건	65.04%
19	기상청	70건	105건	66.67%
20	공정거래위원회	180건	264건	68.18%
21	중소기업청	101건	141건	71.63%
22	식품의약품안전처	603건	837건	72.04%
23	고용노동부	2562건	3,470건	73.83%
24	경찰청	29094건	39,155건	74.30%
25	특허청	151건	202건	74.75%
26	문화재청	275건	353건	77.90%
27	국세청	4340건	5,548건	78.23%
28	통일부	106건	135건	78.52%
29	법무부	9839건	12,327건	79.82%
30	국방부	749건	924건	81.06%
31	원자력안전위원회	10건	12건	83.33%
32	국가보훈처	2018건	2,354건	85.73%
33	산림청	601건	700건	85.86%

5-2) 2012년 정보공개 처리율 현황

순서	기관 명	처리건수	청구건수	처리율
1	대검찰청	1644건	5,139건	31.99%
2	법제처	109건	332건	32.83%
3	방송통신위원회	184건	546건	33.70%
4	국민권익위원회	482건	1,390건	34.68%
5	감사원	205건	559건	36.67%
6	병무청	154건	371건	41.51%
7	금융위원회	81건	191건	42.41%
8	농촌진흥청	76건	178건	42.70%
9	환경부	604건	1,265건	47.75%
10	통계청	157건	314건	50.00%
11	원자력안전위원회	45건	82건	54.88%
1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80건	145건	55.17%
13	기획재정부	274건	484건	56.61%
14	보건복지부	759건	1,335건	56.85%
15	문화체육관광부	425건	730건	58.22%
16	기상청	53건	91건	58.24%
17	관세청	193건	325건	59.38%
18	여성가족부	186건	311건	59.81%
19	조달청	185건	295건	62.71%
20	경찰청	28730건	44,403건	64.70%
21	문화재청	261건	389건	67.10%
22	통일부	110건	162건	67.90%
23	고용노동부	2420건	3,548건	68.21%
24	공정거래위원회	158건	226건	69.91%
25	중소기업청	95건	133건	71.43%
26	식품의약품안전처	809건	1,126건	71.85%
27	방위사업청	96건	133건	72.18%
28	국방부	755건	1,045건	72.25%
29	국세청	4041건	5,400건	74.83%
30	특허청	110건	144건	76.39%
31	법무부	12470건	15,770건	79.07%
32	산림청	449건	547건	82.08%
33	국가보훈처	1853건	2,250건	82.36%

5-3) 2013년 정보공개 처리율 현황

순서	기관 명	처리건수	청구건수	처리율
1	관세청	408건	1,408건	29.00%
2	대검찰청	2463건	7,753건	31.77%
3	방송통신위원회	128건	325건	39.38%
4	문화체육관광부	583건	1,459건	39.96%
5	농촌진흥청	102건	252건	40.48%
6	통계청	163건	395건	41.27%
7	법제처	160건	368건	43.48%
8	환경부	783건	1,718건	45.58%
9	병무청	326건	696건	46.84%
10	보건복지부	768건	1,559건	49.26%
11	고용노동부	2602건	5,230건	49.75%
12	국민권익위원회	341건	685건	49.78%
13	감사원	270건	536건	50.37%
14	기상청	79건	154건	51.30%
15	금융위원회	150건	281건	53.38%
16	기획재정부	368건	661건	55.67%
1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60건	105건	57.14%
18	여성가족부	218건	377건	57.82%
19	경찰청	32713건	55,965건	58.45%
20	문화재청	248건	385건	64.42%
21	국가보훈처	1830건	2,794건	65.50%
22	원자력안전위원회	96건	145건	66.21%
23	국방부	850건	1,282건	66.30%
24	조달청	201건	299건	67.22%
25	법무부	14088건	20,035건	70.32%
26	통일부	130건	184건	70.65%
27	식품의약품안전처	1192건	1,687건	70.66%
28	공정거래위원회	219건	306건	71.57%
29	국세청	3889건	5,434건	71.57%
30	방위사업청	111건	153건	72.55%
31	중소기업청	181건	240건	75.42%
32	산림청	777건	1,023건	75.95%
33	특허청	136건	159건	85.53%

5-4) 2014년 정보공개 처리율 현황

순서	기관 명	처리건수	청구건수	처리율
1	대검찰청	2,142건	6,596건	32.47%
2	방송통신위원회	100건	288건	34.72%
3	통계청	165건	394건	41.88%
4	법제처	154건	342건	45.03%
5	보건복지부	792건	1,753건	45.18%
6	농촌진흥청	122건	242건	50.41%
7	병무청	218건	432건	50.46%
8	환경부	1,043건	2,062건	50.58%
9	감사원	248건	474건	52.32%
10	관세청	365건	695건	52.52%
11	문화체육관광부	639건	1,201건	53.21%
12	국민권익위원회	457건	856건	53.39%
13	금융위원회	124건	230건	53.91%
14	기상청	85건	153건	55.56%
15	조달청	155건	279건	55.56%
16	경찰청	38,293건	66,448건	57.63%
17	여성가족부	193건	329건	58.66%
18	기획재정부	358건	610건	58.69%
19	문화재청	279건	468건	59.62%
20	공정거래위원회	178건	290건	61.38%
21	고용노동부	2,966건	4,692건	63.21%
22	국방부	911건	1,441건	63.22%
23	국세청	3,899건	6,072건	64.21%
24	방위사업청	95건	144건	65.97%
25	식품의약품안전처	1,393건	2,046건	68.08%
2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09건	160건	68.13%
27	중소기업청	141건	206건	68.45%
28	국가보훈처	1,884건	2,454건	76.77%
29	통일부	153건	196건	78.06%
30	법무부	14,875건	18,824건	79.02%
31	원자력안전위원회	112건	140건	80.00%
32	특허청	126건	151건	83.44%
33	산림청	708건	835건	84.79%

【부록 6】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율 현황(2012~2014)

6-1) 2012년 정보공개율 현황

순서	기관 명	공개건수	처리건수	처리율
1	국세청	2,039건	4,041건	50.46%
2	방위사업청	65건	96건	67.71%
3	대검찰청	1,239건	1,644건	75.36%
4	조달청	144건	185건	77.84%
5	국방부	594건	755건	78.68%
6	관세청	156건	193건	80.83%
7	감사원	167건	205건	81.46%
8	공정거래위원회	130건	158건	82.28%
9	경찰청	24,933건	28,730건	86.78%
10	통일부	96건	110건	87.27%
11	금융위원회	71건	81건	87.65%
12	환경부	534건	604건	88.41%
13	고용노동부	2,150건	2,420건	88.84%
14	농촌진흥청	68건	76건	89.47%
15	통계청	141건	157건	89.81%
16	병무청	140건	154건	90.91%
17	기획재정부	250건	274건	91.24%
18	법무부	11,405건	12,470건	91.46%
19	중소기업청	87건	95건	91.58%
20	방송통신위원회	170건	184건	92.39%
21	법제처	101건	109건	92.66%
22	산림청	417건	449건	92.87%
23	보건복지부	709건	759건	93.41%
24	국민권익위원회	456건	482건	94.61%
25	문화재청	248건	261건	95.02%
26	식품의약품안전처	770건	809건	95.18%
27	여성가족부	179건	186건	96.24%
28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77건	80건	96.25%
29	문화체육관광부	412건	425건	96.94%
30	국가보훈처	1,801건	1,853건	97.19%
31	특허청	107건	110건	97.27%
32	원자력안전위원회	44건	45건	97.78%
33	기상청	53건	53건	100.00%

6-2) 2013년 정보공개율 현황

순서	기관명	공개건수	처리건수	처리율
1	국세청	2,089건	3,889건	53.72%
2	대검찰청	1,935건	2,463건	78.56%
3	조달청	158건	201건	78.61%
4	공정거래위원회	181건	219건	82.65%
5	국방부	713건	850건	83.88%
6	기획재정부	309건	368건	83.97%
7	감사원	227건	270건	84.07%
8	통계청	139건	163건	85.28%
9	금융위원회	128건	150건	85.33%
10	국민권익위원회	294건	341건	86.22%
11	관세청	354건	408건	86.76%
12	환경부	692건	783건	88.38%
13	경찰청	29,179건	32,713건	89.20%
14	방위사업청	100건	111건	90.09%
15	고용노동부	2,374건	2,602건	91.24%
16	통일부	122건	130건	93.85%
17	법무부	13,293건	14,088건	94.36%
18	여성가족부	206건	218건	94.50%
19	식품의약품안전처	1,128건	1,192건	94.63%
20	원자력안전위원회	91건	96건	94.79%
21	보건복지부	729건	768건	94.92%
22	산림청	738건	777건	94.98%
23	농촌진흥청	97건	102건	95.10%
24	중소기업청	173건	181건	95.58%
25	문화체육관광부	558건	583건	95.71%
26	문화재청	238건	248건	95.97%
27	병무청	316건	326건	96.93%
28	특허청	133건	136건	97.79%
29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59건	60건	98.33%
30	방송통신위원회	126건	128건	98.44%
31	기상청	78건	79건	98.73%
32	국가보훈처	1,808건	1,830건	98.80%
33	법제처	159건	160건	99.38%

6-3) 2014년 정보공개율 현황

순서	기관명	공개건수	처리건수	공개율
1	국세청	2,243건	3,899건	57.53%
2	방위사업청	73건	95건	76.84%
3	국민권익위원회	353건	457건	77.24%
4	대검찰청	1,690건	2,142건	78.90%
5	감사원	200건	248건	80.65%
6	기획재정부	299건	358건	83.52%
7	국방부	762건	911건	83.64%
8	관세청	309건	365건	84.66%
9	공정거래위원회	152건	178건	85.39%
10	조달청	134건	155건	86.45%
11	환경부	918건	1,043건	88.02%
12	금융위원회	111건	124건	89.52%
13	경찰청	33,664건	38,293건	90.52%
14	고용노동부	2,695건	2,966건	90.86%
15	중소기업청	131건	141건	92.91%
16	원자력안전위원회	105건	112건	93.75%
17	보건복지부	743건	792건	93.81%
18	법무부	14,016건	14,875건	94.23%
19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03건	109건	94.50%
20	통일부	145건	153건	94.77%
21	산림청	671건	708건	94.77%
22	여성가족부	183건	193건	94.82%
23	방송통신위원회	95건	100건	95.00%
24	통계청	157건	165건	95.15%
25	특허청	120건	126건	95.24%
26	문화체육관광부	610건	639건	95.46%
27	병무청	210건	218건	96.33%
28	문화재청	270건	279건	96.77%
29	기상청	83건	85건	97.65%
30	농촌진흥청	120건	122건	98.36%
31	식품의약품안전처	1,371건	1,393건	98.42%
32	국가보훈처	1,862건	1,884건	98.83%
33	법제처	154건	154건	100.00%

【부록 7】 전부공개와 부분공개 비율 비교(2012~2014)

7-1) 2012년 전부공개와 부분공개 비율 비교

순서	기관명	공개건수	전부공개(건)	전부공개율	부분공개(건)	부분공개율
1	기상청	53건	49건	92.45%	4건	7.55%
2	원자력안전위원회	44건	40건	90.91%	4건	9.09%
3	특허청	107건	103건	96.26%	4건	3.74%
4	국가보훈처	1,801건	1,357건	75.35%	444건	24.65%
5	문화체육관광부	412건	384건	93.20%	28건	6.80%
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77건	71건	92.21%	6건	7.79%
7	여성가족부	179건	168건	93.69%	11건	6.31%
8	식품의약품안전처	770건	743건	96.49%	27건	3.51%
9	문화재청	248건	233건	93.95%	15건	6.05%
10	국민권익위원회	456건	418건	91.67%	38건	8.33%
11	보건복지부	709건	665건	93.79%	44건	6.21%
12	산림청	417건	392건	94.00%	25건	6.00%
13	법제처	101건	98건	97.03%	3건	2.97%
14	방송통신위원회	170건	144건	84.71%	26건	15.29%
15	중소기업청	87건	79건	90.80%	8건	9.20%
16	법무부	11,405건	9,435건	82.73%	1,970건	17.27%
17	기획재정부	250건	224건	89.60%	26건	10.40%
18	병무청	140건	135건	96.43%	5건	3.57%
19	통계청	141건	136건	96.45%	5건	3.55%
20	농촌진흥청	68건	60건	88.24%	8건	11.76%
21	고용노동부	2,150건	1,769건	82.28%	381건	17.72%
22	환경부	534건	472건	88.39%	62건	11.61%
23	금융위원회	71건	66건	92.96%	5건	7.04%
24	통일부	96건	84건	87.50%	12건	12.50%
25	경찰청	24,933건	20,339건	81.57%	4,594건	18.43%
26	공정거래위원회	130건	112건	86.15%	18건	13.85%
27	감사원	167건	116건	69.46%	51건	30.54%
28	관세청	156건	142건	91.03%	14건	8.97%
29	국방부	594건	446건	75.08%	148건	24.92%
30	조달청	144건	127건	88.19%	17건	11.81%
31	대검찰청	1,239건	827건	66.75%	412건	33.25%
32	방위사업청	65건	50건	76.92%	15건	23.08%
33	국세청	2,039건	1,766건	86.61%	273건	13.39%

7-2) 2013년 전부공개와 부분공개 비율 비교

순서	기관명	공개건수	전부공개 (건)	전부 공개율	부분공개 (건)	부분 공개율
1	법제처	159건	156건	98.11%	3건	1.89%
2	국가보훈처	1,808건	1,373건	75.94%	435건	24.06%
3	기상청	78건	74건	94.87%	4건	5.13%
4	방송통신위원회	126건	118건	93.65%	8건	6.35%
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59건	57건	96.61%	2건	3.39%
6	특허청	133건	125건	93.98%	8건	6.02%
7	병무청	316건	310건	98.10%	6건	1.90%
8	문화재청	238건	222건	93.28%	16건	6.72%
9	문화체육관광부	558건	521건	93.37%	37건	6.63%
10	중소기업청	173건	162건	93.64%	11건	6.36%
11	농촌진흥청	97건	95건	97.94%	2건	2.06%
12	산림청	738건	615건	83.33%	123건	16.67%
13	보건복지부	729건	684건	93.83%	45건	6.17%
14	원자력안전위원회	91건	79건	86.81%	12건	13.19%
15	식품의약품안전처	1,128건	1,090건	96.63%	38건	3.37%
16	여성가족부	206건	193건	93.69%	13건	6.31%
17	법무부	13,293건	11,209건	84.32%	2,084건	15.68%
18	통일부	122건	110건	90.16%	12건	9.84%
19	고용노동부	2,374건	1,974건	83.15%	400건	16.85%
20	방위사업청	100건	74건	74.00%	26건	26.00%
21	경찰청	29,179건	23,950건	82.08%	5,229건	17.92%
22	환경부	692건	575건	83.09%	117건	16.91%
23	관세청	354건	325건	91.81%	29건	8.19%
24	국민권익위원회	294건	244건	82.99%	50건	17.01%
25	금융위원회	128건	112건	87.50%	16건	12.50%
26	통계청	139건	133건	95.68%	6건	4.32%
27	감사원	227건	162건	71.37%	65건	28.63%
28	기획재정부	309건	276건	89.32%	33건	10.68%
29	국방부	713건	557건	78.12%	156건	21.88%
30	공정거래위원회	181건	155건	85.64%	26건	14.36%
31	조달청	158건	135건	85.44%	23건	14.56%
32	대검찰청	1,935건	1,387건	71.68%	548건	28.32%
33	국세청	2,089건	1,769건	84.68%	320건	15.32%

7-3) 2014년 전부공개와 부분공개 비율 비교

순서	기관명	공개건수	전부공개 (건)	전부 공개율	부분공 개 (건)	부분 공개율
1	법제처	154건	150건	97.40%	4건	2.60%
2	국가보훈처	1,862건	1,278건	68.64%	584건	31.36%
3	식품의약품안전처	1,371건	1,341건	97.81%	30건	2.19%
4	농촌진흥청	120건	115건	95.83%	5건	4.17%
5	기상청	83건	77건	92.77%	6건	7.23%
6	문화재청	270건	255건	94.44%	15건	5.56%
7	병무청	210건	193건	91.90%	17건	8.10%
8	문화체육관광부	610건	552건	90.49%	58건	9.51%
9	특허청	120건	117건	97.50%	3건	2.50%
10	통계청	157건	156건	99.36%	1건	0.64%
11	방송통신위원회	95건	86건	90.53%	9건	9.47%
12	여성가족부	183건	169건	92.35%	14건	7.65%
13	통일부	145건	137건	94.48%	8건	5.52%
14	산림청	671건	606건	90.31%	65건	9.69%
1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03건	101건	98.06%	2건	1.94%
16	법무부	14,016건	12,180건	86.90%	1,836건	13.10%
17	보건복지부	743건	706건	95.02%	37건	4.98%
18	원자력안전위원회	105건	99건	94.29%	6건	5.71%
19	중소기업청	131건	124건	94.66%	7건	5.34%
20	고용노동부	2,695건	2,161건	80.19%	534건	19.81%
21	경찰청	33,664건	26,746건	76.45%	6,918건	23.55%
22	금융위원회	111건	106건	95.50%	5건	4.50%
23	환경부	918건	797건	86.81%	121건	13.19%
24	조달청	134건	125건	93.28%	9건	6.72%
25	공정거래위원회	152건	124건	81.58%	28건	18.42%
26	관세청	309건	294건	95.15%	15건	4.85%
27	국방부	762건	586건	76.90%	176건	23.10%
28	기획재정부	299건	258건	86.29%	41건	13.71%
29	감사원	200건	172건	86.00%	28건	14.00%
30	대검찰청	1,690건	1,269건	75.09%	421건	24.91%
31	국민권익위원회	353건	316건	89.52%	37건	10.48%
32	방위사업청	73건	65건	89.04%	8건	10.96%
33	국세청	2,243건	1,885건	84.04%	358건	15.96%

**【부록 8】 중앙행정기관의 사전정보공개제도 운영
현황(2015.8.31. 기준)**

순서	기관 명	공개 건수	순위	기관 명	공개 건수
1	경찰청	9,590건	23	인사혁신처	272건
2	행정자치부	2,589건	24	농촌진흥청	269건
3	국토교통부	1,045건	25	중소기업청	245건
4	문화체육관광부	668건	26	관세청	213건
5	보건복지부	619건	27	통계청	203건
6	기획재정부	489건	28	국가보훈처	202건
7	외교부	457건	29	국방부	201건
8	교육부	443건	30	금융위원회	197건
9	특허청	433건	31	여성가족부	193건
10	해양수산부	432건	32	조달청	181건
11	대검찰청	408건	33	기상청	157건
12	식품의약품안전처	346건	34	국민권익위원회	151건
13	농림축산식품부	330건	35	국민안전처	145건
14	미래창조과학부	328건	36	병무청	130건
15	환경부	325건	37	공정거래위원회	120건
16	통일부	302건	38	방위사업청	113건
17	문화재청	299건	39	법제처	111건
18	산업통상자원부	293건	40	방송통신위원회	77건
19	고용노동부	293건	41	국무조정실	72건
20	법무부	287건	42	행복청	64건
21	산림청	287건	43	새만금개발청	48건
22	국세청	282건	44	원자력안전위원회	13건

**【부록 9】 중앙행정기관의 결정처리 기한
미준수 비율 현황(2014년)**

순위	기관명	총 처리건수	10일 초과 처리건수	미준수 비율
1	미래창조과학부	478건	115건	24.1%
2	방송통신위원회	100건	24건	24.0%
3	환경부	1,043건	224건	21.5%
4	기획재정부	358건	64건	17.9%
5	원자력안전위원회	112건	19건	17.0%
6	고용노동부	2,966건	481건	16.2%
7	문화체육관광부	639건	92건	14.4%
8	외교부	205건	28건	13.7%
9	농림축산식품부	345건	47건	13.6%
10	공정거래위원회	178건	23건	12.9%
11	통일부	153건	18건	11.8%
12	해양수산부	456건	54건	11.8%
13	보건복지부	792건	92건	11.6%
14	교육부	572건	66건	11.5%
15	방위사업청	95건	10건	10.5%
16	행복청	109건	9건	8.3%
17	국토교통부	1,788건	147건	8.2%
18	국방부	911건	73건	8.0%
19	국민권익위원회	457건	36건	7.9%
20	행정자치부	1,422건	113건	7.9%
21	조달청	155건	9건	5.8%
22	인사혁신처	167건	9건	5.4%
23	감사원	248건	11건	4.4%
24	국민안전처	1,480건	64건	4.3%
25	국무조정실	120건	5건	4.2%

26	문화재청	279건	11건	3.9%
27	경찰청	38,293건	1,209건	3.2%
28	법무부	14,875건	478건	3.2%
29	병무청	218건	7건	3.2%
30	여성가족부	193건	6건	3.1%
31	대검찰청	2,142건	64건	3.0%
32	관세청	365건	10건	2.7%
33	산림청	708건	18건	2.5%
34	산업통상자원부	385건	91건	2.3%
35	국세청	3,899건	81건	2.1%
36	중소기업청	141건	3건	2.1%
37	식품의약품안전처	1,393건	23건	1.7%
38	농촌진흥청	122건	2건	1.6%
39	기상청	85건	1건	1.2%
40	국가보훈처	1,884건	14건	0.8%
41	금융위원회	124건	1건	0.8%
42	통계청	165건	1건	0.6%
43	법제처	154건	0건	0%
44	새만금개발청	28건	0건	0%
45	특허청	126건	0건	0%

ABSTRACT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in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Jeon, Seul-Bi

Major in Archives & Records Management

Dep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Korea's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has evolved over the years, undergoing several revisions in accordance to changes in the government operation paradigm.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have been operating a pro-active and pre-emptiv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in the forms of the Information Disclosure Request System, the Proactive Disclosure System and the Original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Until now, none of the studies conducted on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have comprehensively covered the Information Disclosure Request System, the Proactive Disclosure System and the Original Source Disclosure System.

This study has researched the actual operation of th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by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from the year 2011 to 2014 and through a survey conducted on personnel in charge of the system, identifies the issues and proposes measures for improvement.

The study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most of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had internal operation guidelines and regulations for th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However, some agencies did not provide this information on their website and there were agencies that had not updated their information even though they had passed the due date for reassessment.

Second, although the number of information disclosure requests submitted to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increased by an average of 16% for the four years between 2011 and 2014, the number of requests processed actually saw a decline. The information disclosure rate for the three years from 2012 to 2014 was 85% or higher annually but among the cases of information disclosure, the percentage of full disclosure decreased while that of partial disclosure increased.

Third, the average number of pro-active information disclosure by 44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was 544 with most of the agencies provided fewer than average cases of pro-active information disclosure. Most of the personnel in charge were referring to the 『Operational Manual for Information Disclosure』 and the 『Pro-active Information Publication Operation Guide』 but agencies were using different terminology for pro-active information disclosure while some agencies were not complying with the procedures for uncovering information.

Fourth, the average rate for 45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of disclosing original source was 36% with a wide range of different rates among the agencies. The majority of the personnel in charge were experiencing difficulties in operating the Original Source Disclosure System such as limited functions for filtering sensitive information and personal information and a shortage of education programs for records creators.

Fifth, the survey on the personnel in charge showed that the level of awareness and sense of responsibility were quite high, each found to be an average of 4 or above. On the other hand, the level of satisfaction, sense of accomplishment and sense of pride was rated an average of 3 or less,

showing the level of job satisfaction was overall low.

In order to address this issue, this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measures for improvement. First, all agencies must update their guidelines and regulations in a timely manner and provide this information on their official websites.

Second, all agencies must establish a department dedicated to information disclosure and improve their system to meet any increase in amount of work by flexibly allocating human resources according to the workload.

Third, a uniform and standardized operation guide for the Proactive Disclosure System is needed to clearly define the terminology, as well as the work process and the procedures for pro-actively uncovering information.

Fourth, the system must be regularly reviewed to rectify any gaps including the lack of filtering function for sensitive and personal information. Also education programs on the Original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for records creators as well as personnel in charge should be expanded.

Fifth, operation regulations for the Information Disclosure deliberation committee should be revamped, lowering the percentage of document deliberation while increasing that of direct deliberation, as well as increase the number of outside experts in the committee.

Sixth, a system must be provided to curb indiscrete requests for information disclosure in order to alleviate unnecessary administrative work and efforts to continuously improve working conditions should take place in order to enhance level of satisfaction alongside work efficiency among the personnel in charge.

【Keywords】 : Th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The Information Disclosure Request System, The Proactive Disclosure System, The Original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Staffs in charge of Information Disclosure